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연구진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재정분권, 재정책임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석 지표 체계를 검토
-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기존 체계 유지를 통해 재정분석제도의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지표의 보완·개발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지표 체계 마련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를 통해 2018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지표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의 주요 내용

2018년 재정분석 중점 분석 방향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출확대로 인한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정부중점시책,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등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유도
- 재정법령준수 범위 조정 및 점수 산정 개선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유도

□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검토

- 기존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 신규예고 지표 마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유도를 위한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예고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출자출연전출금 지출
 - 재정운영 효율화 증진 관련 민간위탁금 지출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지방보조금
- 산식보완 및 지표명 수정 지표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의 결손처분액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의 결손처분액 및 납기미도래미징수액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표 자치구 적용 제외
- 지표 산정 방식 및 지표명 변경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업무추진비절감률
- 자치단체 건의사항 반영
 -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간 상충관계 검토 및 개선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처리와 관련된 통합재정수지 산식을 개선·보완
- 지표의 삭제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의 경우 기존지표인 관리채무비율 및 우발채무 지표와 유사성이 높아 지표를 삭제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마련

3. 2018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기본방향

- 재정분권, 재정책임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표 예측가능성 제고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기존 3개 분야(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
 - 정량지표(재정건전성, 효율성)와 정성지표(재정책임성) 분야로 배치하여 구성
 - 정량지표 가중치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가중치 합계 100%) 유지
 - 재정수지(19%), 채무(부채)관리(21%), 공기업(10%), 세입(30%), 세출(20%)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 효율성·재정책임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지표 구성
 - 재정수지 관점: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 채무(부채)관리 관점: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체납액관리 등

- 세출관리: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행사축제경비 등
- (재정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준법운영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지표로 구성
- 재정법령준수, 재정분석대응도, 재정공시노력도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7
제1절 재정분석 개요	9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9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9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11
제2절 2017년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3
1. 지표 분류기준	13
2. 재정분석 지표체계	13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17
제1절 2018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19
1. 2018년도 기본 방향	19
2. 지표 개선 기준	20
제2절 재정건전성 지표의 검토	21
1. 주요 검토 내용	21
2. 재정건전성 세부 지표 검토	22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44
1. 주요 검토 내용	44
2.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 (세입부문)	45
3.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 (세출부문)	52
제4절 재정책임성 지표의 검토	64
1. 개요 및 주요 검토 사항	64
2. 재정책임성 세부 지표 검토	67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	73
1. 참고지표 주요 검토사항	73
2. 참고지표 검토결과	74
제4장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79
제1절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81
1. 2018년도 지표체계(안)	81
2. 2017년도와의 비교	84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87
1. 분야별 배점 검토	87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87
【부 록】	93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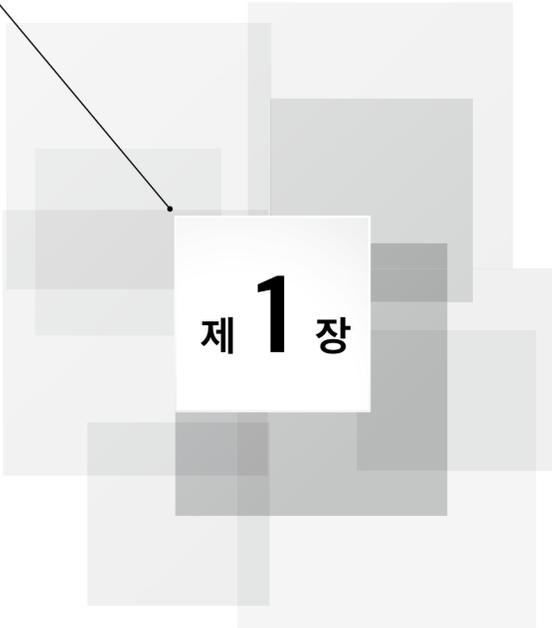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7년)	14
<표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7년)	14
<표 3-1> 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검토내용	21
<표 3-2> 재정건전성 지표 연혁	22
<표 3-3> 재정효율성(세입부문) 지표 주요 검토내용 ..	44
<표 3-4> 재정효율성(세출부문) 지표 주요 검토내용 ..	45
<표 3-5> 재정효율성(세입부문) 지표 연혁	45
<표 3-6> 재정효율성(세출부문) 지표 연혁	52
<표 3-7> 재정책임성 지표 주요 검토내용	67
<표 3-8> 참고지표 주요 검토사항	73
<표 3-9> 참고지표 검토결과	77
<표 4-1>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83
<표 4-2> 2017년도와 2018년도 지표체계 비교	85
<표 4-3>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조정(안)	89
<표 4-4>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안)	90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12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12
<그림 4-1>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82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재정분권, 재정책임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 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석 지표 체계를 검토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출확대로 인한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
 -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재정책임성 강화
 - 세입 및 세출분권 실태 파악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표 연구
 -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지표항목 또는 산정방식 변경 검토
 - 재정 운용실태 분석 및 지방재정통합공개
 - 재정지출 비효율·낭비 사례
 - 재정투자사업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분석결과 전면 공개 및 예산반영 등 환류기능 강화 등 정책 변화 검토
-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기존 체계 유지를 통해 재정분석제도의 연속성,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지표의 보완·개발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지표 체계 마련

1) 본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분석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작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입니다. 따라서 일부내용이 전년도 연구와 유사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 지표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항목 조정 등 지표 적실성 강화
 -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이 중단된 참고지표 개선
- 정부중점정책,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등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개선
- 현행 정성지표(재정책임성)에 대한 지표체계 및 점수 부여 방식 개선
 - 준법성 지표(재정법령준수) 점수 부여 기준 적정성 논의
 - 투명성 지표(재정공시노력도) 가점 인정 범위 기준 논의
 - 대응성 지표(재정분석대응도) 점수 부여 기준 적정성 논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관련 정성지표 반영 논의
- 2014년 이후 재정분석 결과, 등급 정보의 전체 공개 시행 등에 따라 점수 산정방식 보완 및 정량화, 가중치 조정 등 종합평가 및 실효성 강화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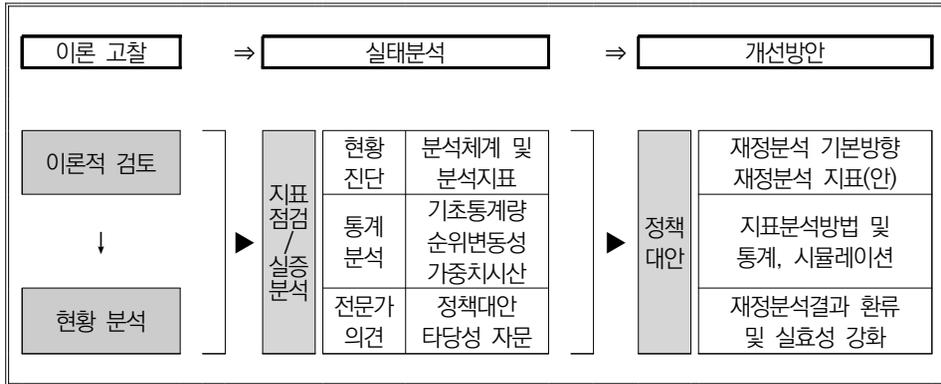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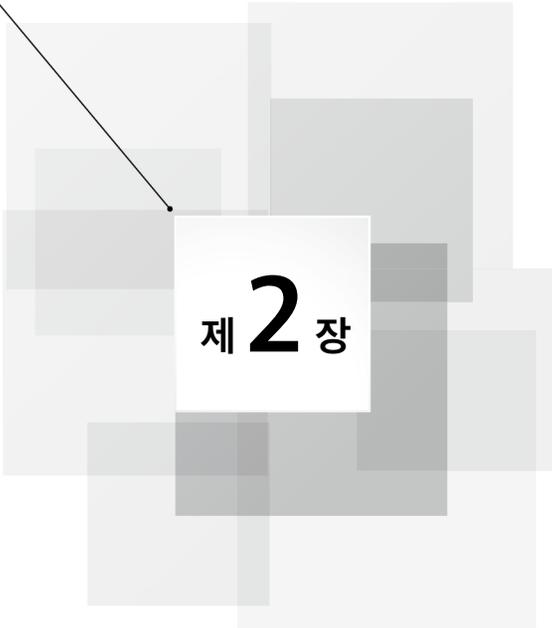
- 지방재정 환경변화 및 현안재정 이슈와 관련하여 재정분석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 2018년도 재정분석에 활용할 분석 지표체계 마련
 -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자치단체 실적 등 지표 적실성 강화
 - 지표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산정공식 검토를 통한 지표체계 실효성 확보
 - 재정책임성 지표(정성지표) 점수부여 방식 보완·개선
 - 재정책임성 분야 정량지표 도입 가능성 검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개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 법령, 제도 연구, 선행연구 검토
 - 재정분석기법, 지표평가방법 등 검토
 - 추세모니터링, 종합지수화 등 검토
- 분석지표 보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표개선 TF 운영*)
 - 분야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지표개선 안 마련
 - * 재정전문가, 계량·통계전문가, 공무원 참여
- 통계분석, 현장조사 등 실증적 분석
 - 지방재정분석 관련 실무자 면담 및 현지조사에 의한 정책방안 타당성 검토
 - 분석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등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제1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2017년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KRILA

제 2 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제1절 재정분석 개요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의 종합적 점검시스템
-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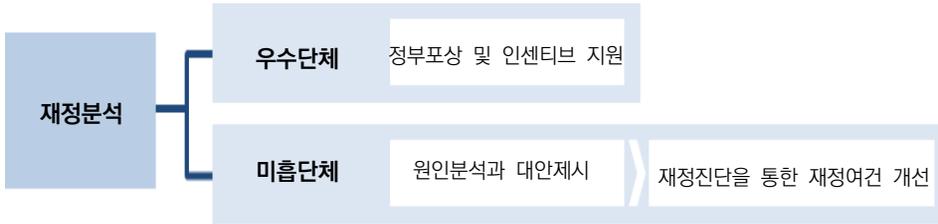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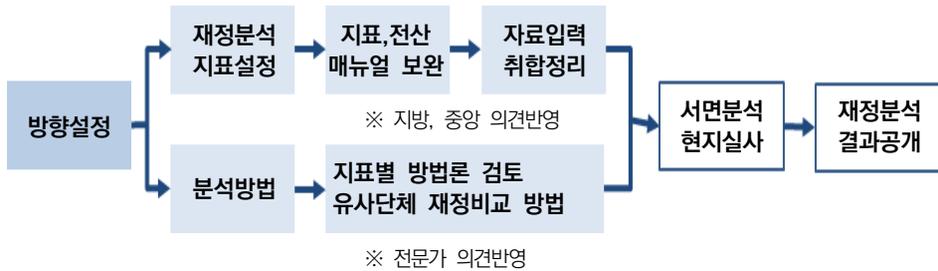
- 재정분석 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유도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분석 절차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제2절 2017년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 지표 분류기준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책임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구분
 - 재정수지 관점 :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 채무(부채)관리 관점 :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재정효율성) 자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채납액 관리 등
 - 세출관리: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행사축제경비 등
- (재정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준법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지표로 구성
 - 재정법령준수, 재정분석대응도, 재정공시노력도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분석 지표 개선 TF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 지표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 특성 등을 고려
- 재정건전성 7개, 재정효율성 12개, 재정책임성 3개 지표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21개 (17개 참고지표 및 신규예고지표 4개 선정)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7년)

분 야	세부지표	배점 (1,000점)
① 재정건전성 (7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2개 지표 ■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관리 3개지표 ■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
② 재정책효율성 (12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6개 지표 	500 ※ 보통교부세 공유
③ 재정책임성 (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대응도 	가/감점 지표

<표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7년)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평가 분야
재정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17%)	통합재정수지비율	12%	
		경상수지비율	5%	
	채무 관리 (23%)	관리채무비율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통합유동부채비율	2%	
	공기업 관리 (10%)	공기업부채비율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29%)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비율:증감률 5: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5%	비율:증감률 5: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5%	비율:제고율 5:5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비율:증감률 5:5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비율:증감률 5: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4%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평가 분야
	세출 효율 (21%)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제외 비율:증감률 5: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4%	비율:증감률 5:5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3%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3%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4%	비율:증감률 5: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재정 책임성	페널티 (감점)	재정법령위반 (6개)		총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재정분석대응도	-5점	총점	
인센티브 (가점)	재정공시노력도	+10점	총점	
22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가/감점		



제 3 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제1절 2018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재정건전성 지표의 검토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제4절 재정책임성 지표의 검토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

KRILA

제 3 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제1절 2018년도 지표 개선의 기본방향

1. 2018년도 기본 방향

가. 실질적 재정건전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출확대로 인한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실질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
- 재정건전성 분야 내 지표 간 중복성·상충성 파악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반영

나. 재정효율성 관리 강화

- 정부중점시책,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세입 및 세출분권 실태 파악 및 책임성 강화 유도

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재정법령준수 범위 및 항목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유도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표 예측가능성 제공

- 2019년(FY2018), 2020년(FY2019) 지표에 대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지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

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노력 강화 유도

-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와 운영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분하였을 때 노력지표적인 성격이 높은 지표들의 평가 비중(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2. 지표 개선 기준

-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함

가. 적합성

- 지표는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정분석의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녀야 함
- 분야별로 지표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지표도입 취지와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나. 시의성

- 지표는 지방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재정환경 변화 동향 및 현안이슈를 반영하여야 함

다. 명확성

-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지표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료가 일관되게 수집되도록 함

라. 신뢰성

- 지표가 시간적 변화 (기저효과), 지역적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황이 변하더라도 유용성을 잃지 않도록 함

제2절 재정건전성 지표의 검토

1. 주요 검토 내용

- 지표 구성 항목의 적합성 및 시의성
- 지표 산식 및 자료의 정확성
 - 현행 자체입력방식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와 이호조 연동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지표값 산출을 고려
- 자치단체 재정운용 노력 반영 가능성
 - 재정효율성 분야와 같이 측정시점 지표(비율지표)와 흐름지표(증감률지표)로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

<표 3-1> 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검토내용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8년 검토사항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경상경비 범위검토
	참고. 실질수지비율		본 지표와 관련성 검토
공기업관점	6.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	중양 일괄입력 가능성 검토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공기업	
채무(부채관리)	3. 관리채무비율		평가방법 변경 검토 BTL 지급액 검토
	4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복식부기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부채	
	참고. 결산대비용부채비율		지표 적정성 검토
	참고. 지방채무상환비율		지표 시의성 검토

2. 재정건전성 세부 지표 검토

1) 재정건전성 측정 지표의 연혁

<표 3-2> 재정건전성 지표 연혁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비율	- 2009년도 도입지표 · 국제기구의 지방재정관련 통계요구로 인해 국제기준의 통합재정수지 지표 도입
	실질수지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자치단체 실제 수입 대비 수지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적 성격이 강하며 단체별보고서 작성 시 산출된 실질수지의 활용성이 떨어짐
	경상수지비율	- 2005년 이전 도입지표 ·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지표
채무(부채) 관리	관리채무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채무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의 수준과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측정, 예측하기 위해 도입(BTL 잔액을 채무범위에 포함)
	관리채무부담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관리채무상환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2016년도 참고지표로 이동 · 관리채무비율과의 높은 상관성 및 이중 평가 문제로 참고지표 이동
	지방채무잔액지수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장래세대부담비율	- 2010년도 도입지표 · 지방재정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을 위해 도입 ·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 · 2013년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지표 간 높은 상관성으로 지표정리 차원에서 참고지표로 이동
	실질채무비율	- 2015년도 도입지표 ·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용자금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용자금만을 측정하기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위해 도입 - 2017년 재정분석에서 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관리채무를 채무 대표지표로 관리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관리채무비율로 일원화
	환금자산 대비부채 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 · 채무 이외 부채개념 (복식부기 부채) 도입에 따라 도입된 지표 · 2016년도 지표명 변경(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 부채비율	- 2016년도 도입지표 · 재정관리 범위를 통합회계 및 우발부채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부채 관리 차원에서 도입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 채비율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관리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지방공단 포함)
	총자본 대비영업 이익률	- 2013년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 관리 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 · 2016년도 적용범위 확대(지방공단 포함)

*회색음영: 2017년 재정분석 지표(질은 음영은 과거 지표)

2) 지표 구성 항목의 적합성: 재정수지, 채무 및 부채 관리 부문

가. 재정수지 부문

(주요검토사항) 지표 도입 취지와 부합하도록 지표 구성항목을 보완

경상수지비율

- **(지표취지)**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구조를 측정하는 지표
- **(검토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적 통제가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 (검토 내용 1) 광역자치단체 법정 경비 항목(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비용 중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세입과 연계 되어 있는 의무지출인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 시 이에 대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경상수지비율 산식 변경 시 평가 결과 변화>

	전국	특광역시	도
경상수지비율(1)	68.14%	68.45%	73.97%
경상수지비율(2)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제외)	51.94%	43.18%	44.17%

	경상수지비율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변경 시)			종합점수			종합점수 (변경 시)		
	비율(1)	비율(2)	점수	등급	비율	점수	등급	비율	점수	등급	비율	점수	등급	
서울 본청	70.72%	34.22%	329	7	다	349	5	나	685.5	7	다	705.5	7	다
부산 본청	68.41%	42.69%	321	8	다	326	8	다	685	8	다	690	8	다
대구 본청	70.61%	43.15%	330	6	나	345	7	다	725	6	나	740	4	나
인천 본청	64.99%	40.35%	377	2	가	372	2	가	729	5	나	724	6	나
광주 본청	65.39%	41.05%	354	5	나	349	5	나	739	3	나	734	5	나
대전 본청	70.67%	45.30%	357	4	나	367	3	나	732.5	4	나	742.5	3	나
울산 본청	66.56%	40.30%	363	3	나	363	4	나	786	1	가	786	1	가
세종 본청	70.27%	58.37%	407	1	가	407	1	가	768	2	가	768	2	가
경기 본청	79.37%	26.27%	370	3	나	390	1	가	705.5	6	나	725.5	5	나
강원 본청	70.90%	48.89%	323	6	나	318	7	나	744.5	4	나	739.5	4	나
충북 본청	64.86%	32.90%	309	8	다	309	8	다	682	8	다	682	8	다
충남 본청	73.69%	39.77%	338	5	나	343	5	나	719	5	나	724	6	나
전북 본청	79.48%	53.23%	319	7	나	319	6	나	657	9	다	657	9	다
전남 본청	78.11%	54.11%	303	9	다	303	9	다	694.5	7	나	694.5	7	나
경북 본청	74.65%	45.21%	365	4	나	370	4	나	767.5	3	나	772.5	2	가
경남 본청	78.34%	37.28%	373	2	가	388	2	가	770.5	1	가	785.5	1	가
제주 본청	66.34%	59.84%	394	1	가	374	3	나	769.5	2	가	749.5	3	나

- **(검토 결과 1)**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경상비용 항목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산정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의 경상비용 항목 적정성이 인정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이 적게 관여되는 지출이기는 하지만, 복식부기 재무제표 규정 상 광역자치단체의 경상비용에 해당한다는데 이견은 없음
 - **(검토 내용 2)** 기초자치단체 경비 항목(수선유지비 항목)
 - 경상비용 성격이 아닌 자본지출적 성격이 강한 수선유지비용(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 수선유지비)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지표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검토 결과 2)** 기초자치단체 수선유지비 항목의 경상비용 항목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산정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복식부기 재무제표 경상비용의 범위에 수선유지비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적정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본지출적 성격의 수선유지비용을 회계처리 미흡으로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실사 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
- 통합재정수지비율
- **(지표취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검토 배경)**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용자금 상환의 경우 용자지출이 아닌 채무상환 행위로 통합재정수지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 현행 통합재정수지 산출 방식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용자금(지역개발기금 상환) 상환이 포함되어 있어 용자지출 증가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회수 및 지출 발생으로 통합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침)

○ **(검토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상환액 처리와 관련된 통합재정수지 산식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결정

-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작성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개선·보완된 방식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
- 다만, 2018년(FY2017) 재정분석의 경우 FY2017년 통합재정수지가 이미 기존 방식으로 산출되었음을 감안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지표값은 기존 방식으로 산출하고 평가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상환액 규모를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나. 채무 및 부채 관리

(주요검토사항) 관리채무비율 중 BTL 지급액의 범위 검토

관리채무비율

- **(지표 취지)**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 **(검토 내용)** 관리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높은 관리채무비율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TL 사업이 주된 이유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지급잔액으로 인하여 관리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단체 위주로 의견이 제시

- 이에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상의 BTL 지급액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 관리범위: 통합회계(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기금)
- 채무범위: 일반채무 + BTL 임차료 + 우발채무(50%)
- 관리채무 =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 임차료
- BTL 임차료: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 **(검토 결과)**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의거하면 BTL 임차료는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산정 항목이 적절하다고 결정

3) 재정건전성 지표의 시의성: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주요검토사항)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지표의 신규 지표화 여부 검토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지표 취지)** 세입결산액 대비 현금지급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의 비중을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
- **(지표 필요성)** 부채감축 등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지출의무인 “금융부채”로 범위를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재정분석 본 지표로 처음 적용됨을 감안하여 기존 지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고지표에 우선 반영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본 지표로 전환을 검토
- **(검토 내용)** 기존 채무 및 부채 지표(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의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분석 및 지표 항목 검토
 - (채무 및 부채지표 간 기술통계량 비교)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11.00%	22.31%	12.07%	7.15%	2.18%	0.63%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53.74%	123.42%	65.47%	38.80%	21.34%	18.42%
통합유동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26.10%	30.09%	29.55%	11.45%	8.68%	7.89%
관리채무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9.33%	18.65%	11.54%	5.49%	2.07%	0.63%

- (부채지표 간 상관관계)

전국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860373	1		
통합유동부채비율	0.51079	0.601963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0.724031	0.674523	0.428585	1

특광역시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743013	1		
통합유동부채비율	0.624799	0.575157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0.916472	0.841212	0.470268	1

도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607529	1		
통합유동부채비율	0.177018	-0.02049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0.929487	0.436173	0.484507	1

시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757003	1		
통합유동부채비율	0.09945	0.42346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0.440506	0.430327	0.206988	1

군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883526	1		
통합유동부채비율	0.318825	0.459746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0.952419	0.850317	0.290106	1

자치구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0.607396	1		
통합유동부채비율	0.317604	0.551369	1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	0.607396	0.317604	1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지방채발행잔액 + 미지급금 (BTL지급액, **재정 지원금 미지급금 등**) + 채무부담행위(발생) + 보증채무부담(확정액)
-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 + BTL 지급액

- **(검토 결과)**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과 기존 채무 및 부채지표와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지표 항목 검토 결과 기존 지표 특히, 관리채무비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 항목 구성에 있어서도 재정 지원금 미지급금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사성이 높아 중복 평가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지원 미지급금의 경우 우발채무의 성격이 강해 기존 우발채무 총액 지표와 유사성이 높아 지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

(주요검토사항) 지표 생산이 중단된 지방채무상환비율 지표의 삭제 여부 검토

지방채무상환비율

- **(지표 취지)** 일반재원결산액 대비 과거 4년 및 미래 4년 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된다고 판단
- **(검토 내용)** 과거 지방채무발행한도액 산정 시 지방채무상환비율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관리채무상환비율로 대체되어 채무관련 공식지표로 지방채무상환비율이 산출되고 있지 않음

지방채무상환비율

지방채무상환비율(%) =

$$\frac{\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과거4년 : 2014, 2015, 2016, 2017년, 미래4년 : 2018, 2019, 2020, 2021년**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4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값임

-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 조정교부금
 -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times 100$$

☞ 미래 4년 : 2018, 2019, 2020, 2021년

(산정 기준연도는 한도산정액 시 이용되는 기초자료의 결산년도 다음연도부터 4개년 간)

(2018년에 발표하는 2019년 한도액은 2017년 결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미래 4년은 2018년부터임)

- ※ 2019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 경상일반재원
 -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 (검토 결과) 지방채발행한도액 기준 시 관리채무상환비율 사용으로 인하여 지방채무상환비율의 산출이 중단되었으나, 재정분석 지표의 산출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와 함께 2019년 제도개편까지 지표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어 지방채무상환비율을 2018년 까지 참고지표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4) 자치단체 재정운영노력 반영 가능성

(주요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검토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증감률을 같이 측정하여 평가에 활용

○ (검토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 및 부채지표에 대해 측정시점 지표(비율지표)와 흐름지표(증감률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채무 및 부채비율 분석결과 (FY2016)

		동종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특 광 역 시	관리채무비율	18.65%	3.91%	16.40%	18.54%	22.32%	29.68%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23.42%	15.13%	76.64%	120.29%	150.65%	264.89%
	통합유동 부채비율	30.09%	2.06%	24.21%	32.80%	37.42%	52.32%
관리채무비율		11.54%	5.11%	11.26%	12.25%	12.89%	14.08%

		동종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도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5.47%	47.53%	56.00%	60.31%	73.62%	93.57%
	통합유동 부채비율	29.55%	14.14%	23.38%	30.10%	32.12%	53.31%
시	관리채무비율	5.49%	0.00%	2.10%	4.85%	7.96%	20.48%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8.80%	2.22%	15.95%	33.97%	57.32%	126.39%
	통합유동 부채비율	11.45%	1.39%	5.02%	8.86%	14.24%	65.62%
군	관리채무비율	2.07%	0.00%	0.01%	1.29%	3.46%	9.42%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1.34%	2.14%	6.66%	13.48%	28.01%	101.78%
	통합유동 부채비율	8.68%	0.43%	3.76%	6.09%	10.06%	36.06%
자치구	관리채무비율	0.63%	0.00%	0.00%	0.00%	0.68%	5.27%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8.42%	5.36%	11.83%	15.19%	22.38%	79.70%
	통합유동 부채비율	7.89%	2.46%	4.32%	6.97%	9.50%	45.78%

○ (검토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비율과 증감률을 같이 측정하여 채무상환노력을 측정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증감률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증감률
- 통합유동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증감률

※ 관리채무비율의 경우 분모가 세입결산액이므로 관리채무규모의 증감 측정이 가능하나,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의 경우 분모가 각각 환금자산과 통합유동자산이므로 부채규모에 대한 증감보다 비율의 증감률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

- 채무 및 부채 비율 (증감률)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전국	9.33%	-7.07%	53.74%	-10.02%	26.10%	-6.71%
특광역시	18.65%	-4.34%	123.42%	-4.43%	30.09%	-1.45%
도	11.54%	-4.73%	65.47%	-7.61%	29.55%	-4.59%
시	5.49%	-17.21%	38.80%	-16.34%	11.45%	11.09%
군	2.07%	-18.28%	21.34%	-9.97%	8.68%	15.92%
자치구	0.63%	-8.09%	18.42%	-14.31%	7.89%	-7.90%

· 특광역시

특 광역시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부 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서울 분청	16.35%	3.47%	106.48%	1.23%	52.32%	-6.03%
부산 분청	21.75%	-0.89%	264.89%	23.23%	36.32%	30.21%
대구 분청	20.42%	-4.71%	134.10%	-2.52%	36.86%	-0.42%
인천 분청	29.68%	-10.94%	171.14%	-3.63%	39.11%	19.61%
광주 분청	24.03%	-2.79%	143.82%	-12.15%	26.01%	8.16%
대전 분청	16.66%	-4.19%	74.44%	-12.67%	18.79%	9.28%
울산 분청	16.42%	2.39%	77.38%	-3.52%	29.27%	5.00%
세종 분청	3.91%	-17.06%	15.13%	-25.42%	2.06%	-77.40%

특 광역시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분청	7	다	7	다	8	다	8	다	8	다	8	다
부산 분청	8	다	8	다	7	다	7	다	7	다	7	다
대구 분청	6	나	6	나	6	나	6	나	5	나	6	나
인천 분청	5	나	2	가	3	나	2	가	3	나	2	가
광주 분청	3	나	5	나	4	나	3	나	4	나	3	나
대전 분청	4	나	4	나	5	나	5	나	6	나	4	나
울산 분청	1	가	3	나	1	가	4	나	2	가	5	나
세종 분청	2	가	1	가	2	가	1	가	1	가	1	가

· 도

도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경기 본청	12.39%	-13.64%	55.51%	-19.75%	35.89%	-14.27%
강원 본청	12.89%	5.12%	60.31%	-3.05%	53.31%	-12.19%
충북 본청	14.08%	6.11%	93.57%	0.75%	32.12%	-13.18%
충남 본청	12.25%	2.81%	64.42%	1.02%	27.33%	-1.78%
전북 본청	11.26%	-7.69%	78.01%	-5.97%	23.38%	-17.18%
전남 본청	12.89%	1.52%	73.62%	2.59%	30.10%	50.33%
경북 본청	12.06%	3.91%	56.00%	6.09%	18.85%	-14.52%
경남 본청	5.11%	-27.93%	47.53%	-25.17%	30.81%	-9.03%
제주 본청	10.90%	-12.75%	60.31%	-25.00%	14.14%	-9.50%

도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본청	6	나	3	나	5	나	2	가	5	나	2	가
강원 본청	4	나	6	나	4	나	7	나	4	나	7	나
충북 본청	8	다	8	다	8	다	8	다	8	다	8	다
충남 본청	5	나	5	나	6	나	5	나	6	나	6	나
전북 본청	9	다	7	나	9	다	6	나	9	다	5	나
전남 본청	7	나	9	다	7	나	9	다	7	나	9	다
경북 본청	3	나	4	나	3	나	4	나	3	나	4	나
경남 본청	1	가	2	가	2	가	3	나	2	가	3	나
제주 본청	2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 시 (관리채무비율 기준 상위 10개, 하위 10개 단체)

시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경기 화성시	0.00%	-100.00%	2.22%	-83.68%	10.04%	-27.26%
경기 시흥시	0.00%	-100.00%	69.82%	7.29%	65.62%	8.16%
경기 오산시	0.00%	-100.00%	4.26%	-63.67%	2.77%	-37.58%

시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경기 여주시	0.00%	0.00%	6.52%	-2.39%	2.24%	-8.15%
경기 과천시	0.00%	0.00%	5.02%	-28.33%	1.39%	-43.24%
경기 고양시	0.01%	-97.54%	11.01%	-29.77%	8.81%	-26.66%
경기 부천시	0.14%	-95.86%	7.47%	-75.84%	3.63%	-78.67%
경남 밀양시	0.16%	-25.35%	7.22%	16.37%	5.00%	37.93%
전남 순천시	0.47%	-48.19%	9.29%	-11.34%	3.84%	32.84%
경기 광명시	0.66%	-47.64%	7.59%	-31.45%	3.10%	-22.85%
경북 경주시	10.99%	2.49%	45.63%	-19.89%	7.03%	-13.24%
경북 영주시	11.08%	10.30%	70.92%	-14.19%	14.63%	111.83%
전북 전주시	11.20%	-16.06%	62.90%	-14.32%	12.26%	-4.75%
전남 목포시	11.23%	-18.18%	72.17%	-11.26%	13.44%	-10.13%
경남 김해시	11.61%	-4.85%	83.46%	-19.47%	13.86%	-38.19%
강원 속초시	12.37%	-9.78%	55.36%	-3.65%	17.80%	85.54%
경북 문경시	12.62%	-10.53%	108.74%	-12.95%	11.65%	-7.08%
강원 태백시	14.79%	-36.62%	67.11%	-32.15%	5.09%	-97.10%
충남 계룡시	15.32%	-25.54%	51.30%	-8.39%	4.33%	-48.44%
전북 익산시	20.48%	-7.63%	76.00%	-0.35%	17.86%	45.89%

시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화성시	36	다	5	가	34	다	3	가	31	다	2	가
경기 시흥시	17	나	25	다	11	나	20	나	11	나	18	나
경기 오산시	5	가	6	가	3	가	5	가	3	가	4	가
경기 여주시	59	라	30	다	67	라	38	다	71	마	50	다
경기 과천시	3	가	11	나	7	가	18	나	10	나	23	다
경기 고양시	57	라	8	나	59	라	7	가	59	라	7	가
경기 부천시	18	나	12	나	13	나	9	나	12	나	8	나
경남 밀양시	10	나	10	나	18	나	16	나	24	다	20	나
전남 순천시	4	가	17	나	6	가	23	다	6	가	25	다
경기 광명시	21	나	20	나	24	다	22	나	23	다	22	나

시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북 경주시	53	라	64	라	50	다	62	라	48	다	60	라
경북 영주시	65	라	70	마	62	라	71	마	60	라	70	마
전북 전주시	62	라	51	다	56	라	45	다	52	다	35	다
전남 목포시	72	마	68	마	72	마	66	라	69	마	62	라
경남 김해시	50	다	58	라	44	다	54	라	33	다	51	다
강원 속초시	63	라	66	라	61	라	64	라	56	라	61	라
경북 문경시	71	마	73	마	70	마	72	마	67	라	68	마
강원 태백시	33	다	62	라	21	나	52	다	13	나	45	다
충남 계룡시	74	마	74	마	74	마	74	마	73	마	74	마
전북 익산시	75	마	75	마	75	마	75	마	75	마	75	마

· 군 (관리채무비율 기준 상위 10개, 하위 10개 단체)

군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대구 달성군	0.00%	0.00%	5.43%	35.95%	3.21%	72.67%
인천 강화군	0.00%	-100.00%	12.08%	42.92%	7.71%	88.41%
울산 울주군	0.00%	0.00%	2.14%	-51.80%	0.43%	-81.35%
강원 화천군	0.00%	-100.00%	4.38%	-58.39%	3.53%	-33.47%
강원 인제군	0.00%	-100.00%	13.75%	34.46%	11.18%	132.77%
충북 단양군	0.00%	0.00%	6.52%	-24.74%	2.26%	-27.30%
충남 태안군	0.00%	0.00%	5.71%	-23.77%	3.55%	-35.09%
전북 무주군	0.00%	0.00%	6.12%	9.75%	3.37%	11.31%
전북 장수군	0.00%	0.00%	4.99%	23.57%	4.54%	22.59%
전북 순창군	0.00%	0.00%	7.47%	-7.32%	7.45%	-4.42%
충북 보은군	5.18%	-26.73%	38.89%	-28.21%	6.55%	10.28%
충남 금산군	5.19%	-15.73%	55.25%	-4.94%	10.63%	87.39%
전남 함평군	5.23%	-28.51%	38.33%	-19.06%	9.28%	19.56%
경북 예천군	5.83%	-8.52%	59.35%	-28.74%	11.55%	-20.40%
충북 진천군	6.50%	-11.42%	77.76%	-18.83%	22.77%	-31.24%

군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채 비율	비율 증감률
충남 홍성군	6.79%	-14.53%	68.87%	-6.99%	10.36%	-29.21%
경북 영덕군	7.04%	28.17%	57.18%	6.86%	18.47%	17.10%
강원 평창군	7.46%	53.25%	35.86%	0.77%	3.70%	-31.74%
전남 강진군	8.59%	-7.26%	74.98%	-17.09%	9.88%	-2.70%
경북 칠곡군	9.42%	-17.37%	101.78%	-11.87%	17.89%	-7.32%

군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대구 달성군	1	가	9	나	1	가	22	나	4	가	28	다
인천 강화군	75	라	24	나	77	마	24	나	79	마	19	나
울산 울주군	17	나	12	나	19	나	14	나	21	나	14	나
강원 화천군	23	나	28	다	17	나	17	나	14	나	13	나
강원 인제군	28	다	27	다	26	다	26	다	25	나	24	나
충북 단양군	6	가	25	나	8	가	32	다	12	나	35	다
충남 태안군	2	가	11	나	5	가	15	나	8	가	17	나
전북 무주군	20	나	15	나	23	나	21	나	29	다	26	다
전북 장수군	24	나	23	나	31	다	33	다	36	다	40	다
전북 순창군	41	다	35	다	47	다	41	다	52	다	48	다
충북 보은군	62	라	63	라	54	다	58	다	49	다	52	다
충남 금산군	67	라	74	라	63	라	73	라	60	라	70	라
전남 함평군	57	다	68	라	48	다	62	라	41	다	55	다
경북 예천군	48	다	60	라	34	다	49	다	30	다	37	다
충북 진천군	78	마	76	마	75	라	74	라	66	라	68	라
충남 홍성군	81	마	81	마	81	마	81	마	80	마	81	마
경북 영덕군	76	마	79	마	76	마	79	마	76	마	78	마
강원 평창군	70	라	73	라	73	라	76	마	71	라	75	라
전남 강진군	74	라	75	라	65	라	71	라	57	다	61	라
경북 칠곡군	82	마	82	마	79	마	82	마	77	마	82	마

· 자치구 (관리채무비율 기준 상위 10개, 하위 10개 단체)

자치구	관리채무 비율	증감률	환금자산대 비부채비율	비율 증감률	통합유동부 채비율	비율 증감률
서울 종로구	0.00%	0.00%	7.95%	-31.76%	2.52%	-48.39%
서울 중구	0.00%	0.00%	9.35%	-26.52%	3.10%	-48.64%
서울 용산구	0.00%	0.00%	16.90%	34.70%	10.44%	50.35%
서울 성동구	0.00%	0.00%	16.57%	-43.39%	7.69%	-35.26%
서울 광진구	0.00%	0.00%	15.17%	-23.30%	8.24%	-29.04%
서울 동대문구	0.00%	0.00%	37.86%	55.79%	10.96%	25.05%
서울 중랑구	0.00%	0.00%	12.73%	-14.37%	4.16%	-5.00%
서울 성북구	0.00%	0.00%	16.01%	-18.45%	8.29%	2.82%
서울 강북구	0.00%	0.00%	11.01%	-36.10%	3.76%	-21.87%
서울 도봉구	0.00%	0.00%	12.21%	-22.43%	5.67%	-32.67%
부산 서구	1.69%	-31.79%	21.61%	-11.86%	7.91%	3.54%
부산 동구	1.87%	-28.54%	31.86%	5.49%	10.22%	13.85%
대구 북구	1.89%	-10.75%	28.81%	-10.05%	11.68%	7.01%
인천 남구	2.44%	-6.91%	25.30%	-25.83%	6.97%	-15.07%
인천 서구	2.82%	-11.30%	18.29%	-11.89%	4.63%	-10.79%
광주 서구	3.00%	-7.55%	29.18%	-18.89%	7.56%	-26.07%
인천 중구	3.75%	202.49%	19.32%	113.08%	3.38%	20.20%
인천 부평구	4.66%	-16.27%	42.51%	-31.46%	10.75%	4.62%
대전 동구	5.19%	-7.00%	79.70%	-15.73%	36.34%	-24.45%
서울 강남구	5.27%	-6.64%	12.64%	-23.81%	3.35%	-2.24%

자치구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종로구	25	다	25	다	29	다	28	다	33	다	29	다
서울 중구	23	다	24	다	24	다	27	다	29	다	28	다
서울 용산구	61	라	41	다	65	마	49	라	67	마	50	라
서울 성동구	31	다	21	나	35	다	18	나	34	다	18	나
서울 광진구	22	다	15	나	23	다	17	나	24	다	17	나
서울 동대문구	62	라	54	라	64	마	59	라	65	마	62	라

자치구	기존 평가 방식				비율: 증감률 7:3				비율:증감률 5:5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종합점수		재정건전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중랑구	49	라	20	나	51	라	25	다	54	라	26	다
서울 성북구	60	라	43	다	62	라	47	다	64	마	48	다
서울 강북구	32	다	23	다	36	다	23	다	39	다	23	다
서울 도봉구	39	다	26	다	43	다	30	다	44	다	31	다
부산 서구	58	라	57	라	56	라	53	라	53	라	49	라
부산 동구	64	마	67	마	60	라	67	마	60	라	67	마
대구 북구	44	다	61	라	39	다	56	라	38	다	53	라
인천 남구	52	라	51	라	42	다	46	다	40	다	40	다
인천 서구	68	마	62	라	68	마	58	라	68	마	54	라
광주 서구	65	마	65	마	61	라	63	마	59	라	59	라
인천 중구	66	마	66	마	69	마	68	마	69	마	69	마
인천 부평구	67	마	68	마	63	마	65	마	55	라	58	라
대전 동구	69	마	69	마	67	마	69	마	63	마	68	마
서울 강남구	35	다	52	라	22	다	43	다	17	나	32	다

○ (검토 결과 1)

- 관리채무,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기존 체계 대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 그러나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의 경우 재정운용노력이 아닌 재정상태 측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지표의 취지가 있으므로 상태 지표에 증감률 지표를 추가하여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 (검토 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분야가 아닌 별도의 분야 지표로 측정하는 방안

○ (검토 결과 2)

- 채무상환노력 측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인하는 것은 적절하나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으로 구성되는 재정분석의 체계 이외 별도의 분야 지표로 채무상환노력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재정분석 지표체계 중 채무 및 부채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노력을 포함한 재정운용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중치 체계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5) 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

**(주요검토사항)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과 재정분석진단 제도 연계에 따른 재정
진단 기준 검토**

□ 현행

- 재정위기관리제도(사전경보시스템)의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5개 부문(7개 지표)로 구성되어 주의, 심각(위기)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지표라도 ‘주의’ 기준을 초과하면 심층진단을 시행

심층진단 및 등급 부여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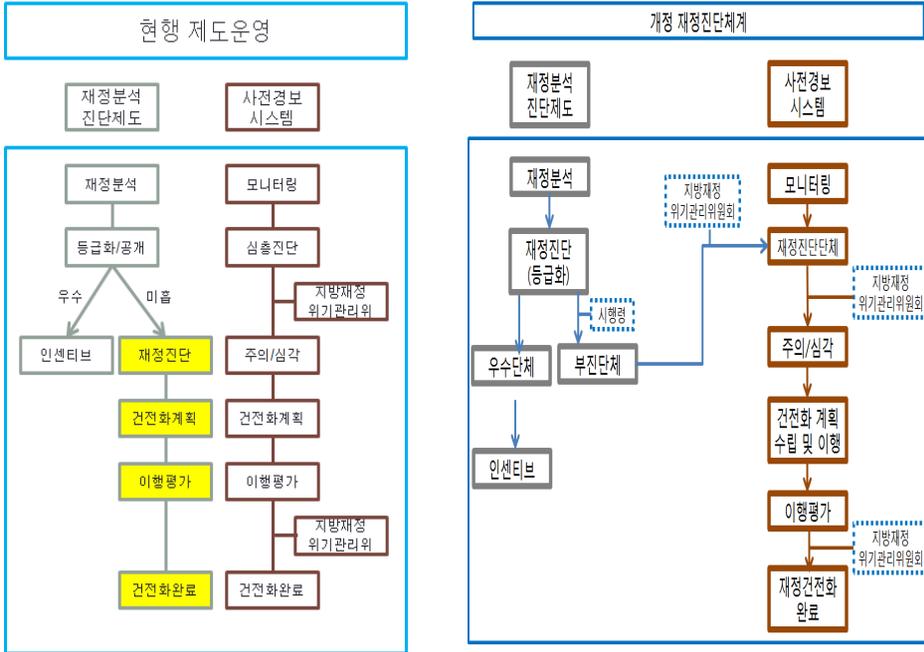
관점	재정지표	「주의」	「심각」
수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 초과	30% 초과
채무 관리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채무상환비율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지방세징수액 현황	50% 미만	0% 미만
자금 관리	금고잔액현황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공기업부채비율	400% 초과	600% 초과
	개별공기업부채비율	400% 초과	600% 초과

- 재정분석에 따른 재정진단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을 시행

재정분석 결과의 재정진단 기준 (현행)

-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 결산 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편



(검토결과)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에 의거하여 지정되는 재정진단단체 선정 대한 개선안 검토 안 및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재정진단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안을 별도로 도출

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노력 반영 강화

(검토사항) 재정수지, 채무 및 부채 지표로 구성되는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별 가중치 검토

- 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가중치 검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기술

제3절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1. 주요 검토 내용

- 지표 산식, 산정항목, 지표항목 범위 적정성
 - 세입 체납액 지표에 대한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표 항목 적정성 검토
 - 세외수입 지표 항목 범위 (임시세외수입 포함 가능성 검토)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실현 기조에 따른 세출효율의 범위
 -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민간위탁금 등 지표의 항목 범위 검토

- 지표 산정 방식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지표명, 산정방식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지방보조금, 행사축제경비 지표의 한도액 대비 지출액 적용 가능성 검토

<표 3-3> 재정효율성(세입부문) 지표 주요 검토내용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8년 검토사항
세입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자체수입비율(증감률)로 통합 검토 경상세외수입비율을 세외수입비율로 대체 검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보통교부세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산식 중 결손처분액 처리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산식 중 결손처분액 및 납기미도래미징수액 처리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보통교부세	탄력세 범위, 산식검토

<표 3-4> 재정효율성(세출부문) 지표 주요 검토내용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의견	비고
세출효율성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산식변경	지방보조금 한도액(기준액) 도입에 따른 산식변경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범위검토	지표 항목 적정성 검토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보통교부세	산식검토 지표명 변경	지방의원 국외여비 기준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보통교부세	지표명 변경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산식변경	행사축제경비 한도액(기준액) 도입에 따른 산식변경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 항목 적정성 검토

2.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 (세입부문)

1) 재정효율성(세입부문) 측정 지표 연혁

<표 3-5> 재정효율성(세입부문) 지표 연혁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효율성 (세입관리)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건전성 지표(자체세입 기반)로 도입 · 2013년 효율성 지표로 이동	- 재정분석 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 연계 강화를 위해 효율성으로 이동 - 2017년 지방세수입비율과 경 상세외수입비율로 이원화
효율성 (세출관리)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 2005년 ~ 2007년 도입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로 도입 · 2016년 지방보조금비율로 지표명 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출자출연금비율)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지표명 변경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고정 지출로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인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016년 도입지표 ·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금 편성 사례 방지 및 민간으로 이전되는 세출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도입 후 2016년 본 지표화	
노력도 (세입확충노력) 2014년 세입효율성으로 통합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로 도입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 취합하여 활용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로 도입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2010년 도입지표	

*회색음영: 2017년 재정분석 지표(붉은색음영은 과거 지표)

2) 산정방식의 적정성 강화: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세외수입), 탄력세율

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검토사항)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정 시 결손처분액을 재정분석 해당 결산년도와 전년도 체납누계액에 모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검토내용)

- (현행)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정 시 결손처분액을 전년도 체납누계액 다음 연도 이월액 산정 시에만 반영
- (개선 의견) 재정분석 해당 결산년도의 체납누계액 반영액 산정 시에도 결손처분액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 (검토결과)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의 경우 전년도 말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지방세체납액 대비 재정분석 결산년도 말까지 발생한 지방세체납액의 증감

-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말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지방세체납액 산정 시에만 결손처분액을 제외하는 현행 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
- 현년도 말 지방세체납액누계액의 경우 재정분석 결산년도 말 현재까지의 지방세체납액 관리 현황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액이 제외되지 않음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정 시에는 전년도 말 다음연도로 이월된 지방세체납액 대비 현년도 말 지방세체납액의 증감 정도 측정이 목적이므로 이월액에서만 결손처분액을 제외함
 - 이상의 내용을 편람에 명확히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17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체납누계액 (A=a-b)	미수납액 (a)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b)		
		직접입력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17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6년도 말 체납누계액			지표값 (%) {(A-B)/B}× 100	
체납 누계액 (A=a-b)	미수납액 (a)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b)	체납 누계액 (B=c-f)	다음연도 이월액 (c=d-e)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f)
				미수납액 (d)	결손 처분액 (e)		
		직접입력				직접입력	

나.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검토사항)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정 시 결손처분액을 재정분석 해당 결산년도와 전년도 체납누계액에 모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검토내용)

- (현행)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정 시 결손처분액을 전년도 체납누계액 다음 연도 이월액 산정 시에만 반영
- (개선 의견) 재정분석 해당 결산년도의 체납누계액 반영액 산정 시에도 결손처분액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 (검토결과)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의 경우 전년도 말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외수입체납액 대비 재정분석 결산년도 말까지 발생한 세외수입체납액의 증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말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외수입체납액 산정 시에만 결손처분액을 제외하는 현행 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
- 현년도 말 세외수입체납액누계액의 경우 재정분석 결산년도 말 현재까지의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현황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액이 제외되지 않음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정 시에는 전년도 말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외수입체납액 대비 현년도 말 세외수입체납액의 증감 정도 측정이 목적이므로 이월액에서만 결손처분액을 제외함
-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의 경우 현년도와 전년도 모두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17년도 체납누계액 (A=a-b)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2017년말 현재 체납누계액(a)	2017년말 납기미도래미 징수액(b)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17년도 체납누계액 (A)	2016년도 체납누계액 (B = c)	다음연도 이월액 (c = d-e-f)		2016년말 납기미도래 미징수액 (f)	지표값 (%) $\{(A-B)/B\} \times 100$
		미수납액 (d)	결손 처분액 (e)		

다. 탄력세율 적용 범위 수정

(검토사항)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표 항목 중 주민세 개인균등분 항목의 적용 범위 검토

- (검토결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활용되는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주민세 개인균등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특·광역시세로 자치구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표 산정 시 자치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A)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B)	지표값 (A/B)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3) 산정항목의 적합성 보완: 경상세외수입비율

(검토사항)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표에 임시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비율(증감률)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 ※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등,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²⁾		임시세외수입비율 ³⁾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전국	4.82%	10.44%	2.17%	7.69%	2.65%	12.80%
특광역시	4.34%	-5.51%	1.75%	15.19%	2.59%	-15.73%
도	2.39%	2.02%	0.61%	-0.59%	1.79%	2.94%
시	6.48%	21.43%	2.78%	4.00%	3.69%	39.01%
군	4.42%	14.44%	1.67%	0.24%	2.74%	25.24%
자치구	7.45%	13.06%	5.31%	13.54%	2.14%	11.89%

※ 특·광역시

특광역시	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임시세외수입비율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서울 본청	3.88%	12.28%	2.22%	20.57%	1.65%	2.77%
부산 본청	2.90%	6.79%	1.10%	15.15%	1.79%	2.22%
대구 본청	3.31%	-13.05%	1.39%	2.39%	1.92%	-21.64%
인천 본청	10.27%	-26.79%	1.30%	9.83%	8.98%	-30.15%
광주 본청	3.59%	-2.26%	1.30%	0.28%	2.28%	-3.65%
대전 본청	3.36%	12.49%	1.74%	2.31%	1.61%	25.99%
울산 본청	4.21%	-5.15%	2.19%	22.11%	2.01%	-23.69%
세종 본청	2.75%	42.00%	1.65%	27.42%	1.10%	71.53%

2) 2016 회계연도 지방재정연감(결산자료)

3) 2016 회계연도 지방재정연감(결산자료)

도	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임시세외수입비율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비율	증감률
경기본청	3.01%	3.18%	0.49%	4.61%	2.52%	2.91%
강원본청	2.56%	17.18%	0.44%	9.66%	2.12%	18.89%
충북본청	1.84%	-15.96%	0.51%	7.86%	1.33%	-22.51%
충남본청	1.90%	4.65%	0.42%	-9.79%	1.49%	9.54%
전북본청	1.64%	3.80%	0.48%	12.11%	1.16%	0.72%
전남본청	1.72%	-2.33%	0.33%	-2.92%	1.39%	-2.19%
경북본청	1.75%	6.88%	0.39%	-3.95%	1.36%	10.41%
경남본청	1.96%	-19.00%	0.62%	-25.11%	1.34%	-15.80%
제주본청	4.25%	16.63%	2.50%	6.78%	1.75%	34.38%

특광역시	기존 방식(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7	다	7	다	8	다	7	다
부산 본청	8	다	5	나	7	다	4	나
대구 본청	6	나	3	나	6	나	3	나
인천 본청	5	나	2	가	4	나	2	가
광주 본청	3	나	4	나	3	나	4	나
대전 본청	4	나	6	나	5	나	6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2	가	8	다	2	가	8	다

도	기존방식(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본청	6	나	6	나	6	나	3	나
강원 본청	4	나	1	가	4	나	1	가
충북 본청	8	다	8	다	8	다	8	다
충남 본청	5	나	4	나	5	나	5	나
전북 본청	9	다	9	다	9	다	9	다

도	기존방식(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비율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종합점수		재정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전남 본청	7	나	5	나	7	나	6	나
경북 본청	3	나	3	나	3	나	4	나
경남 본청	1	가	2	가	2	가	2	가
제주 본청	2	가	7	나	1	가	7	나

○ **(검토결과)** 임시세외수입의 경우 연도 간, 단체 간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표값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게 되어 지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방식의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3.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 (세출부문)

1) 재정효율성(세출부문) 측정 지표 연혁

<표 3-6> 재정효율성(세출부문) 지표 연혁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효율성 (세입관리)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 2010년 도입지표 · 건전성 지표(자체세입 기반)로 도입 · 2013년 효율성 지표로 이동	- 재정분석 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 연계 강화를 위해 효율성으로 이동 - 2017년 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외수입비율로 이원화
효율성 (세출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005년 ~ 2007년 도입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로 도입 · 2016년 지방보조금비율로 지표명 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출자출연금비율)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6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지표명 변경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고정 지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도입지표 ·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금 편성 사례 방지 및 민간으로 이전되는 세출의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도입 후 2016년 본 지표화 	
노력도 (세입확충노력) 2014년 세입효율성으 로 통합	지방세징수율(제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로 도입 	· 보통 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사항은 별도 취합하여 활용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로 도입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로 도입 	
	탄력세율적용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노력도 (세출절감노력) 2014년 세출효율성으 로 통합	인건비절감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2017년 인건비집행률로 지표명 변경 및 참고지표 이동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07년 도입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노력도와 재정투명성 측정을 위해 도입된 지표 ·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로 도입되어 2016년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로 지표 변경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도입지표 ·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표로 자본시설에 대한 고정지출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측정관점	세부지표	비고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 2010년 도입지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를 위해 도입 · 세출절감노력도 지표가 세출효율성으로 통합되면서 2015년 참고지표로 이동 · 2016년 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로 지표명 변경
자본시설관리 (2014년 세출관리로 통합)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 2013년 도입지표 지출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제3섹터로의 출연출자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직접 측정하기 위해 도입) - 2017년 참고지표로 이동

2) 지표의 명확성 보완: 절감노력도 지표의 산식 및 지표명

가.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검토사항 1) 의원국외여비 기준액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 예산편성지침과 재정 분석의 기준액이 상이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검토사항 2) 지표산정 방식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로 변경되어 하향지표(낮을수록 양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지표명이 절감노력도 (상향지표 성격)로 되어 있어 지표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어 지표명 및 산식 개선을 검토

○ (검토결과 1)

- 의원국외여비 기준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조정액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존 편람의 기준을 유지하고 산정방식(의원수 X 200만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적용하며 이를 편람에 적시하는 것으로 결정

○ (검토결과 2)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를 ‘지방의회경비절감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 **(현행산식)**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100; 지표값이 낮을수록 기준액 대비 결산액이 적어 지방의회경비절감을 위한 노력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향지표)
- **(개선안)** $100 -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 * 100\}$;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정도가 크다고 판단(상향지표)
- **(적용예시)**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경비로 9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90\text{만원} / 100\text{만원}\} * 100 = 10\%$; 10% 절감률을 나타냄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경비로 6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60\text{만원} / 100\text{만원}\} * 100 = 40\%$; 40% 절감률을 나타냄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경비로 12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120\text{만원} / 100\text{만원}\} * 100 = -20\%$; -20% 절감률을 나타냄

나.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검토사항) 지표산정 방식이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로 변경되어 하향지표(낮을수록 양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지표명이 절감노력도(상향지표 성격)로 되어 있어 지표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어 지표명과 산식 개선을 검토

○ (검토결과)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를 ‘업무추진비절감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 **(현행산식)** (업무추진비결산액 / 업무추진비기준액)*100; 지표값이 낮을수록 기준액 대비 결산액이 적어 업무추진비절감을 위한 노력정도가 크다고 판단 (하향지표)
- **(개선안)** $100 - \{(업무추진비결산액 / 업무추진비기준액) * 100\}$;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절감을 위한 노력정도가 크다고 판단 (상향지표)
- **(적용예시)**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90만원 / 100만원\} * 100\} = 10\%$; 10% 절감률을 나타냄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60만원 / 100만원\} * 100\} = 40\%$; 40% 절감률을 나타냄
 - 기준액이 100만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100 - \{120만원 / 100만원\} * 100\} = -20\%$; -20% 절감률을 나타냄

3) 지표 산출 기준의 시의성 보완: 지방보조금, 행사축제경비

가.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검토사항) 지방보조금 한도액(기준액)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한도액(기준액) 대비 지출액으로 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결과)

- 지방보조금 한도액(기준액)에 대한 산출기준 문제 및 교부세와의 산식 공유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산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방식(비율 및 증감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나.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검토사항) 행사축제경비 한도액(기준액)이 2017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도입·시행됨에 따라 한도액(기준액) 대비 지출액으로 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결과)

- 2018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기준액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4) 지표의 시의성 보완: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민간위탁금

-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현안이슈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의 시의성을 보완

가.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검토사항) 민간영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 노력 측정 가능성을 검토

지방보조금 중 국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과 연결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지방보조금 항목에 대한 검토

○ (검토안 1)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사업평가 부문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규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거나 정성평가 지표화 하여 총점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 투입액이 객관적으로 이호조로부터 산출되는 경우
 -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가 투입액이 아닌 일자리 개수, 고용인원 등의 자료로 산출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

○ (검토안 2)

- 2018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한도액 산정 시 한도액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에 대한 투입규모를 파악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안 3)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보조금 중 국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과 연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지방보조금 항목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출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결과)

- (검토안 1)을 재정분석지표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출액을 지방보조금 규모에서 차감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 평가 시에만 차감하여 반영하며 지방보조금 비율(증감률) 지표는 기존 방식으로 산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의 반영 및 분석결과의 기저효과 방지를 위해 2019회계연도 결산이 적용되는 2020년 재정분석부터 도입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을 2018년 재정분석 편람에 예고하는 것으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의 추이 분석을 위하여 2018년 재정분석에서는 참고지표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을 활용하여 관련 지표값을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대비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출액의 비율로 산출하며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취합하여 중앙에서 일괄 입력)

지방보조금 결산액(A)							일자리 관련 보조 사업 (g)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f)	민간경상 사업보조 (a)	민간단체 법정운영 비보조 (b)	민간행 사사업 보조(c)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d)	사회복 지사업 보조 (e)	민간자 본사업 보조 (f)			
일반회계							중앙입력		
기타특별							중앙입력		

※ 평가 시 지방보조금 결산액에서 기존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함께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을 차감하여 산출 및 적용

- (검토 안 2)의 경우 (검토안 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검토 안 1을 개선안으로 추진
- (검토 안 3)에 대해서는 현행 결산제도 상 국도비와 순지방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보조금을 순지방비로 구성되는 지방보조금과 구분하여 분석·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 100% 지방비로 운영되는 순지방비 자체재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시책추진과 연계되어 국도비와 지방비(자체재원)가 섞여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제외하여 재정분석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음
- 국도비와 자체재원이 섞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 규모를 자치단체가 직접입력하는 방안이 있으나 보조금 집행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 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를 현재 결산기준 상 객관적으로 파악·검증하는 것이 불가능
-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이호조와 연계되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지방비 구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 이를 재정분석에서 활용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여 결산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추후 여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재정분석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전출금을 통해 지출하는 금액 중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민간영역으로의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표항목으로 변경을 검토(내부거래, 공적부문에 대한 법정출연·전출금 등 제외)

출자출연전출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기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을 검토

○ (검토안 1)

- 전출금 항목 중 현행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 내부거래 성격이 있어 민간영역으로의 지출이라 볼 수 없어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출연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법정출연금(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안 2)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전출금을 활용하여 인재채용, 일자리 창출 등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분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결과 1)

- 전출금 항목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 내부거래 성격이 있어 민간영역으로의 지출로 볼 수 없는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평가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 지표도입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제3섹터 및 민간으로의 출자·출연·전출로 인한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을 위하여 지표산출은 기존방식을 유지(평가 시에만 공기업전출금을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과정에서의 반영 및 기저효과 방지를 위해 2020년 재정분석(FY2019)부터 적용
- 출연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연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법정출연금에 대해 평가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 지표도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표산출은 기존방식을 유지하고 평가 시에만 법정출연금을 제외하여 반영
- 2018년 재정분석(FY2017)부터 적용하며, 법정출연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직접입력하고 재정분석 실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검증을 실시

계 (A=a+b+c+d+e+f)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법정출연금 (g)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 단지본 전출금 (d)	공기업 경상전 출금 (e)	공기업 자본전 출금 (f)			
일반회계							중앙입력		
기타특별							중앙입력		
공기업특별							중앙입력		
기금							중앙입력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 지표산출 시 제외대상: 전출금(309)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등 700번대 항목은 평가 시 제외(지표산출 시 포함) FY2019부터

※ 출연금 중 법정출연금은 평가 시 제외 (중앙일괄입력)

○ (검토결과 2)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전출금을 활용하여 인재채용, 일자리창출 등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사업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1안)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각 사업의 일자리창출 정도(일자리 수 등)를 등급화하여 가점 부여

- (2안) 각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 결산액 대비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 지출액의 비중을 측정하여 등급화 하여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의 반영 및 기저효과 방지를 위해 2020년 재정분석(FY2019)부터 적용

점수 적용 방식 (예시)	배점
출자출연전출금 결산 대비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비율	
- 5% 미만	(1점)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5% 미만	(3점)
- 15% 이상 ~ 20% 미만	(4점)
- 20% 이상 ~	(5점)

다. 민간위탁금비율(비율증감률)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위탁하는 업무 중 민간영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측정하여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검토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이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효율성 향상, 민간 영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연계되었을 경우 정성평가를 통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위탁 사업 중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일자리창출(인력채용) 증진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 목록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1안)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각 사업의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일자리창출 정도를 등급화 하여 가점 부여

- (2안) 각 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금 결산액 대비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 지출액의 비중을 측정하여 등급화 하여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의 반영 및 기저효과 방지를 위해 2020년 재정분석(FY2019)부터 적용

점수 적용 방식 (예시)	배점
민간위탁금 결산 대비 일자리창출 및 예산절감 관련 사업비 비율	
- 5% 미만	(1점)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5% 미만	(3점)
- 15% 이상 ~ 20% 미만	(4점)
- 20% 이상 ~	(5점)

제4절 재정책임성 지표의 검토

1. 개요 및 주요 검토 사항

- 정부의 현안시책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 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로서 준법성, 투명성, 대응성 관련 지표로 구성
- 정부중점시책,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등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재정법령준수 범위 조정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유도
- 재정책임성 지표체계 현황 및 산식

분야	측정관점	세부지표(28개)	비고
재정책임성 (3개)	준법성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페널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인센티브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페널티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 점수부여 기준 : 법령위반 (건당 -2점)	일반회계	위반법령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평가내용</th> <th style="width: 4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td> <td></td> </tr> <tr> <td>- 지방재정법 위반</td> <td>-2점*건수</td> </tr> <tr> <td>-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td> <td>-2점*건수</td> </tr> <tr> <td>- 지방계약법 위반</td> <td>-2점*건수</td> </tr> <tr> <td>- 지방회계법 위반</td> <td>-2점*건수</td> </tr> <tr> <td>- 재난관리전출금 확보</td> <td>-5점</td> </tr> <tr> <td>-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td> <td>-5점</td> </tr> <tr> <td>-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td> <td>0점</td> </tr> </tbody> </table> <p>- 점수산정 : 결산연도 기준 위반법령건수 × (-2점) ※ 법령위반 사례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상환용자금 관리 부적정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 - 정부합동감사(감사실시연도 기준), 감사원감사(처분요구연도 기준) 수감 시 재정관련 법령위반사항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 분석 지표값에 반영</p>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 재난관리전출금 확보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 재난관리전출금 확보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재정 책임성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frac{2016\text{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text{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12, 13, 14) 평균}} \times 100(\%)$ <p>※ 보통세(111)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 예산 작성 시 2015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4년부터 최근 3년 계산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일반회계	1%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지역상생발전 기금 전출금 확보	$\frac{2016\text{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6\text{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text{의 }5\%} \times 100(\%)$ <p>※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 2016년도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p>	일반회계	35%																				
재정 책임성	27. 재정공시 노력도	- 재정공시노력도 (10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평가내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td> <td>5점</td> </tr> <tr> <td>- 4개 이상</td> <td>5점</td> </tr> <tr> <td>- 3개</td> <td>4점</td> </tr> <tr> <td>- 2개</td> <td>3점</td> </tr> <tr> <td>- 1개</td> <td>2점</td> </tr> <tr> <td>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td> <td>5점</td> </tr> <tr> <td>-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td> <td>2점</td> </tr> <tr> <td>-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td> <td>2점</td> </tr> <tr> <td>-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td> <td>1점</td> </tr> </tbody> </table> <p>※ 현지실사 시 재정공시 평가항목을 점검 ※ 2016년 결산 재정공시 기준임</p>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5점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 2개	3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일반회계	건수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5점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 2개	3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28. 재정분석 대응도	- 재정분석대응도 (-5점)	일반회계	위반 여부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평가내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td> <td>-2점</td> </tr> <tr> <td>- 준수</td> <td></td> <td>0점</td> </tr> <tr> <td>- 미준수</td> <td></td> <td>-2점</td> </tr> <tr> <td colspan="2">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td> <td>-3점</td> </tr> <tr> <td>- 예</td> <td></td> <td>0점</td> </tr> <tr> <td>- 아니오</td> <td></td> <td>-3점</td> </tr> <tr> <td colspan="2">*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 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td> <td></td> </tr> <tr> <td colspan="3">※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사항 점검</td> </tr> </tbody> </table>	평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3점	- 예		0점	- 아니오		-3점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 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사항 점검				
평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3점																													
- 예		0점																													
- 아니오		-3점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 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사항 점검																															

2. 재정책임성 세부 지표 검토

<표 3-7> 재정책임성 지표 주요 검토내용

측정관점	분석지표	의견	비고
준법성	20. 재정법령준수	개선건의 (Δ)	점수 산정 방식 변경 논의
투명성	21. 재정공시노력도	유지	
대응성	22. 재정분석대응도	유지	

1)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 재정법령준수

-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 파악하여 법령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부여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평가내용	배점
-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 재난관리전출금 확보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 점수산정 : 결산연도 기준 위반법령건수 × (-2점)

※ 법령위반 사례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상환용자금 관리 부적정 등

○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감사기간 및 기관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법령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페널티 상한이 없어 전체 재정 분석 평가 지표 영역을 압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점수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7년 신규로 추가된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가 다수인 단체의 경우 큰 폭의 페널티가 적용 (예: 경기본청, 인천본청)

특광역시	재정법령준수	종합점수	
		순위	등급
서울 본청	-9.00	8	다
부산 본청	-16.00	7	다
대구 본청	0.00	6	나
인천 본청	-46.00	4	나
광주 본청	0.00	3	나
대전 본청	0.00	5	나
울산 본청	0.00	1	가
세종 본청	-4.00	2	가

도	재정법령준수	종합점수	
		순위	등급
경기 본청	-56.00	6	나
강원 본청	-2.00	4	나
충북 본청	0.00	8	다
충남 본청	-16.00	5	나
전북 본청	-12.00	9	다
전남 본청	-2.00	7	나
경북 본청	0.00	3	나
경남 본청	-10.00	2	가
제주 본청	-2.00	1	가

기초자치단체	재정법령준수	종합점수	
		순위	등급
경기 화성시	-28.00	36	다
경기 연천군	-28.00	66	라
경기 양평군	-26.00	79	마
인천 강화군	-24.00	75	라
경기 여주시	-22.00	59	라
경기 성남시	-20.00	46	다
경기 안성시	-20.00	48	다
경남 사천시	-20.00	51	다
경기 고양시	-18.00	57	라
경기 양주시	-18.00	61	라

- **(검토안 1)** 재정관련 법령 위반 건수 당 -2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재정법령 준수 페널티의 상한 설정을 검토(예: 2016년 재정분석에서 지표 도입 시 적용되었던 최대 페널티 -45점을 상한으로 설정)
- **(검토안 2)** 위반 건수 당 -2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최근 3년 간 위반건수의 평균 또는 전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주기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검토안 3)** 2016년 지표 도입 시 적용되었던 법령 위반 당 페널티를 부여하여 자치단체 간 편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각 분야 당 -15점)
- **(검토결과)** 2017년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 자치단체별로 최대 28건 (-56점)의 페널티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재정분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점수 배점 및 페널티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 재정법령준수의 기존 점수 산정 방식(건당 -2점 감점)을 유지하되, 재정분석 실사단 회의에서 위반사례의 건수, 특성, 감사주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종 점수를 결정
 - 지방자치단체별 감사주기의 차이, 재정법령준수 위반 감점만으로 종합결과 순위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점수 산정 방식 (건당 -2점 감점)을 유지하되(상한미적용) 위반 건별 중요도, 누적건수별 페널티 적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석 실사단 회의를 통해 차등감점을 적용

※ 차등감점 적용 방법 (재정분석 실사단 회의를 통해 감점 총점 결정)

- **(차등적용 방법 1)** 위반 건별 중요도 (감사처분수준)
 -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결과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건당 -2점의 감점을 적용하되 처분 유형에 따른 위반 건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감점을 차등하여 적용
 - 감사처분이 내려진 사안 중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예: 행정상: 기관경고, 신분상: 중징계) 건당 -2점 감점
 - (예) 건명: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횡령, 처분종류: 중징계
 - 감사처분이 내려진 사안 중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예: 행정상: 시정·주의, 신분상: 경징계) 건당 -1점 감점
 - (예) 건명: 진입도로 등 공사 설계 부적정, 처분종류: 시정·주의
 - 감사처분이 내려진 사안 중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예: 훈계, 통보) 건당 -0.5점 감점
 - (예) 건명: 진입도로 등 공사 설계 부적정, 처분종류: 훈계

○ (차등적용 방법 2) 위반 건별 중요도 (감액조치수준)

-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결과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건당 -2점의 감점을 적용하되 재정상 감액조치정도에 따른 위반 건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감점을 차등하여 적용
- 감액조치 1억 원 이상 건: -2점
감액조치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점
감액조치 5천만 원 미만: -0.5점
- ⇒ 위반건별 중요도의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 (예: 감사처분 결과 기관경고, 중경징계에 감액조치가 6천만 원인 경우 -2점 적용)

○ (차등적용 방법 3) 누적건수별 차등 적용

-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결과 10건 이상 감사처분이 내려진 경우 누적건수별로 감점총점을 차등하여 적용
- 10건 이하에 대해서는 감점총점을 100% 적용
10 건 초과 ~ 20건 이하에 대해서는 감점총점을 90% 적용
20건 초과에 대해서는 감점총점을 80% 적용
- (예) 총 위반 건수가 9건이면서 위반건별 중요도를 감안한 감점총점이 -10점인 경우 100% 반영하여 -10점 적용
- (예) 총 위반 건수가 15건이면서 위반건별 중요도를 감안한 감점총점이 -20점인 경우 90%를 반영하여 -18점 적용
- (예) 총 위반 건수가 25건이면서 위반건별 중요도를 감안한 감점총점이 -40점인 경우 80%를 반영하여 -32점 적용

3)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유도: 재정공시노력도

- 재정공시노력도의 경우 기존 10점 가점을 유지하되, 미흡공시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정공시 미흡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청에 대한 시정여부를 재정분석 실시단의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정요청에 대한 대응노력이 없다고 판단할 시 -2점의 감점을 부여(2019년 재정분석부터 적용)

재정공시노력도	배점	재정공시노력도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 실적	5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 실적	5점
- 4개 이상	5점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 3개	4점
- 2개	3점	- 2개	3점
- 1개	2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3. 재정공시 시정요청 조치 여부 (2019년 재정분석부터 적용)	-2점
		- 네	
		- 아니오	

4)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재정분석 대응도

○ 재정분석대응도(감점) 지표는 현행 방식을 유지

재정분석대응도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3점
- 예	0점
- 아니오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3점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

1. 참고지표 주요 검토사항

<표 3-8> 참고지표 주요 검토사항

2017년 재정분석 참고지표		2018년 재정분석 참고지표 (안)
참고1. 지방채무잔액지수	2018년까지 유지	참고1. 지방채무잔액지수
참고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참고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참고3.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3.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4. 관리채무상환비율		참고4. 관리채무상환비율
참고5. 장래세대부담비율		참고5. 장래세대부담비율
참고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참고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참고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참고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참고8. 예산집행률		참고8. 예산집행률
참고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참고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참고10. 정책사업투자비율		참고10. 정책사업투자비율
참고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참고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참고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참고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참고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참고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참고15. 실질수지비율		지표명 지표 항목 변경
참고16. 인건비집행률	참고16. 인건비집행률	
참고17.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참고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재정지원 일 자리사업 지출)	
참고18. 기금정비율	지표삭제 별도기금지표	참고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참고19. 기금미수채권비율		기금지표 별도 구성
참고20. 일자리사업지출비율	별도기금지표 항목변경	
참고2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참고지표유지	

2. 참고지표 검토결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사업지출비율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의 결산액 비중을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
-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 지출액의 비율로 측정
- 2018년 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자치단체별로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 계획 시 주민의견 청취까지를 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로 처리하는 단체도 있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결과)** 재정분석에서 세출결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출액의 비중을 측정 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지출비율을 재정분석 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출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
 - 전년도와 같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참고지표로 유지

○ 일자리사업지출비율

- 정부 중점 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 관련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측정·분석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을 참고지표로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액의 비중을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총예산대비 일자리사업예산의 비중으로 측정
-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리 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표값의 차이가 매우 큼

- **(검토결과)** 지방보조금 지출액 중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 (합동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에서의 활용을 위해 관련 지표를 일자리사업지출비율로 수집하는 것으로 결정

□ 재정환경 및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참고지표

○ 지방채무상환비율

- 일반재원 대비 과거 4년 및 미래 4년 간 지방채무상환액의 비율
- **(검토결과)** 통계생산이 중단된 지표(관리채무상환비율로 대체 생산)로 더이상 수집의 의의가 없으나, 재정분석 지표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위하여 금년도 재정분석까지 지표를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

○ 지방보조사업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액의 추이 분석을 위하여 기존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을 활용하여 관련 지표값을 수집
 -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대비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출액의 비율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출액은 합동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취합하여 중앙에서 일괄입력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전출금을 활용하여 인재채용, 일자리창출 등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사업 목록에 대한 증빙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지표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중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일자리창출(인력채용) 증진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 목록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가점을 부여

□ 지표의 명확성 제고: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주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과 기존 채무 및 부채지표와의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지표 항목 검토 결과 기존 지표 특히, 관리채무비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 항목 구성에 있어서도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사성이 높아 중복 평가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지원 미지급금의 경우 우발채무의 성격이 강해 기존 우발채무총액 지표와 유사성이 높아 지표를 삭제

□ 기금 지표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 자치단체 측면에서 평가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평가를 재정분석으로 통합하여 실시
- 전년도 기금성과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참고지표에 “기금지표”를 신규지표로 추가

· 2017년 재정분석 기금지표 (기금정비율, 기금미수채권비율)

·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 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정비)

· 2018년 재정분석 참고지표(기금지표)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를 추가 (예) 기금정비율, 일몰제적용률, 기금미수채권비율, 통합기금예치율,

계획적 운영비율, 일반회계의존율, 경상적경비비율

○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재정분석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되, 지표별 정의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은 별도로 실시(기금분석 지표는 추후 별도 결정)

- 참고지표의 경우 신규(예고) 지표 도입과 기금분석 지표의 추가로 인하여 기존 참고지표를 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기금지표로 재구성

<표 3-9> 참고지표 검토결과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유지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율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율	유지
	참고 3.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 3. 관리채무부담비율	유지
	참고 4. 관리채무상환비율		참고 4. 관리채무상환비율	유지
	참고 5. 장래세대부담비율		참고 5. 장래세대부담비율	유지
	참고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참고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유지
	참고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참고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유지
	참고 8. 예산집행률		참고 8. 예산집행률	유지
	참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참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0. 정책사업투자비율		참고 10. 정책사업투자비율	유지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유지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유지
			참고 16. 인건비 집행률	지표명
			참고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규모 (정량지표)	항목 수정
			참고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유지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지표 삭제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신규 (예고) 지표	신규1. 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정성지표)	신규 (예고)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신규2. 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정성지표)	신규 (예고)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기금 지표	기금성과분석지표 1	신규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2	신규	
참고 16. 인건비집행률		기금성과분석지표 3	신규	
참고 17.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4	신규	
참고 18. 기금정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5	신규	
참고 19. 기금미수채권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6	신규	
참고 20. 일자리사업지출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7	신규	
참고 2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제 4 장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1절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KRILA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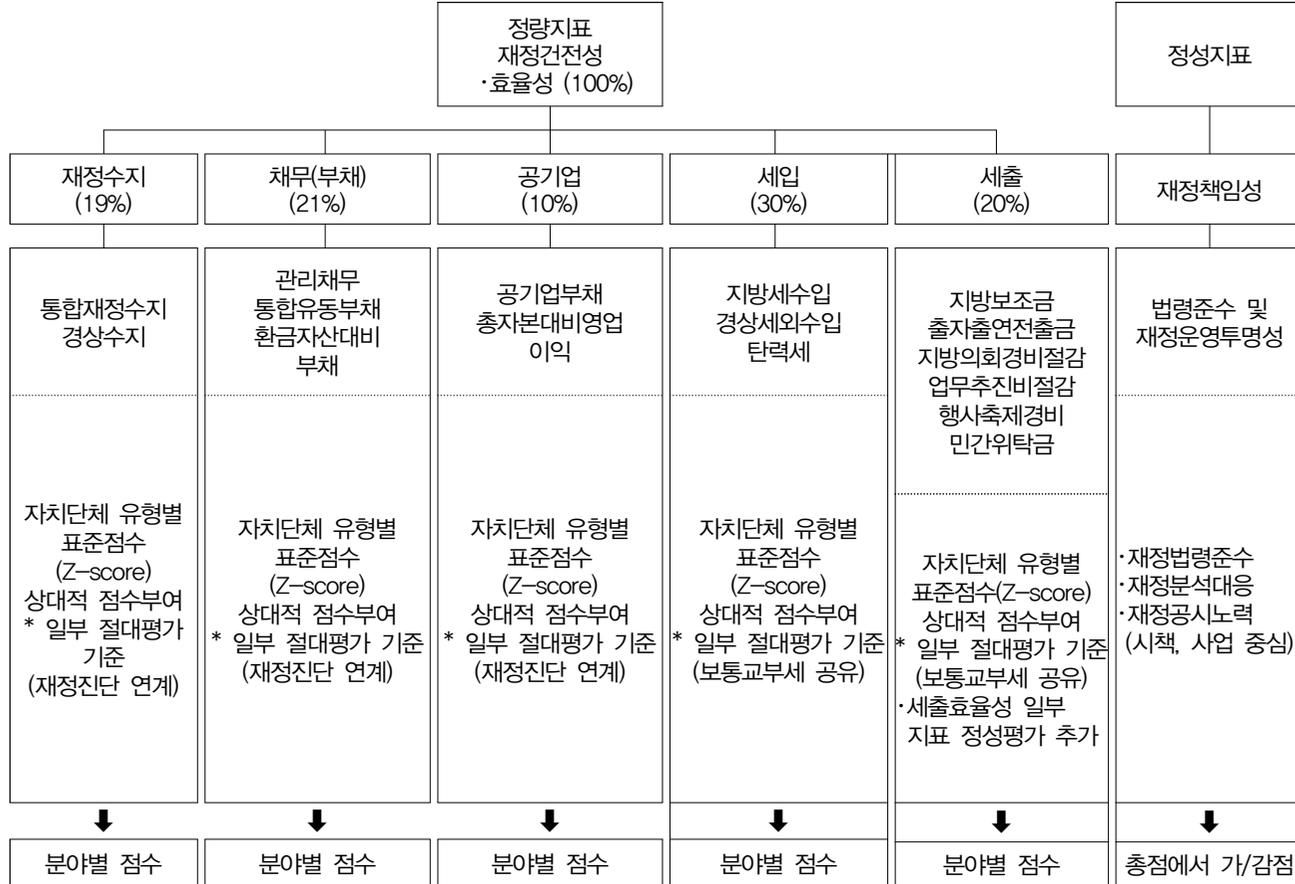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1절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1. 2018년도 지표체계(안)

- 재정분권, 재정책임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출확대로 인한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
 - 지표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체계 정립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세입 및 세출분권 실태 파악 및 책임성 강화 유도
 - 출납폐쇄기한 조정 등 제도개선을 반영한 지표 체계 구성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부중점시책,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등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유도
 - 재정법령준수 범위 조정 및 점수 산정 개선을 통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유도
- 자치단체에 대한 지표 예측가능성 제공
 - 2020년(FY2019) 재정분석 적용 신규지표에 대한 예고
 - *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민간위탁금 지표 항목 조정

<그림 4-1> 2018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표 4-1>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분야	부문	재정분석지표	비고
재정 건전성 (7개)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BTL지급액 포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복식부기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공단 포함	
재정효율성 (12개)	세입효율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식설명보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식설명보완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산식보완
	세출효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평가대상 항목수정(예고)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평가대상 수정(예고) 정성평가지표추가(예고)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표명 수정 산식 수정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표명 수정 산식수정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평가대상 수정(예고) 정성평가지표추가(예고)
재정책임성 (3개)	법령준수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 건 X -2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건 X -2점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 건 X -2점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 건 X -2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미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미확보 -5점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5점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재정공시 수정보완 조치 여부)		-2점	
정량 : 19개, 정성 : 3개		※ 재정책임성 지표는 총점에서 가/감점	

2. 2017년도와의 비교

1) 지표체계

- 정량지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성지표 분야(재정책임성) 지표 체계 유지
 - 분야: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 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2)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 지표 개선

- 신규(예고) 지표
 - 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정성지표
 - 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 재정효율성 증대) 정성지표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관련 지방보조금
 - 기금운용성과분석 지표
- 산식보완 및 지표명 수정 지표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통합재정수지비율
- 지표삭제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항목수정 예고
 -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표 4-2> 2017년도와 2018년도 지표체계 비교

2017년 지표		2018년 지표개선(안)		
분야	지표	분야	지표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유지
	2. 경상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유지
	3. 관리채무비율		3. 관리채무비율	유지
	4.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유지
	5. 통합유동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지
	6. 공기업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유지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유지
II.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II.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유지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유지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유지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식 보완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식 보완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산식 보완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일자리지원 평가 제외 (예고)	항목 수정 (예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정성평가 추가(일자리창출) 예고	항목 수정 (예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표 명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표 명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유지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정성평가 추가(일자리창출 및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예고	항목 수정 (예고)
III. 재정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III. 재정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산식 수정
	21. 재정공시노력도		21. 재정공시노력도	산식 수정
	22. 재정분석대응도		22. 재정분석대응도	유지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유지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율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율	유지

2017년 지표		2018년 지표개선(안)			
분야	지표	분야	지표		
	참고 3.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 3. 관리채무부담비율	유지	
	참고 4. 관리채무상환비율		참고 4. 관리채무상환비율	유지	
	참고 5. 장래세대부담비율		참고 5. 장래세대부담비율	유지	
	참고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충액비율		참고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충액비율	유지	
	참고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참고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유지	
	참고 8. 예산집행률		참고 8. 예산집행률	유지	
	참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참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0. 정책사업투자비율		참고 10. 정책사업투자비율	유지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률)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률)	유지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유지
			참고 16. 인건비집행률	참고 16. 인건비집행률	지표 명
			참고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규모 (정량지표)	참고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출규모 (정량지표)	항목 수정
	참고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참고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유지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지표 삭제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증감률)	신규1. 출지출연전출금 (일자리창출_정성지표)	신규 (예고)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신규2. 민간위탁금 (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정성지표)	신규 (예고)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기금 지표	기금성과분석지표 1	신규	
	참고 16. 인건비집행률		기금성과분석지표 2	신규	
참고 17.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3		신규		
참고 18. 기금정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4		신규		
참고 19. 기금미수채권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5		신규		
참고 20. 일자리사업지출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6		신규		
참고 2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기금성과분석지표 7		신규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1. 분야별 배점 검토

1) 검토사항

- 현행 분야별 배점 체계 유지
 - 재정건전성 대 재정효율성: 500점 : 500점
 - 세부지표의 가중치 재조정

2) 검토결과

- 재정분석 분야별 비중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재정분석 지표체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담보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노력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 (재정건전성)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지관리 부문과 채무 및 부채관리 부문의 가중치를 조정
 - 수지관리 17% ⇨ 19%(경상수지 5% ⇨ 7%); 경상비용에 대한 축소 노력 반영
 - 채무 및 부채관리 23% ⇨ 21%(환금자산대비부채 7% ⇨ 5%); 지방자치단체 환금자산의 운영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의 경우 자치단체 개선노력의 반영정도가 낮은 지표로 비중을 낮추어 반영

- (재정효율성) 재정효율성 부문의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분석 결과가 재정건전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입효율과 세출효율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비중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
 - 세입효율성 부문 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재정규모, 재정구조)의 반영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노력의 반영정도가 낮은 지표의 비중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
 - 지방세수입비율 5% ⇨ 4%, 경상세외수입비율 5% ⇨ 3%
 - 세입효율성 부문 중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노력의 반영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의 비중을 상향하여 세입효율성 부문의 대표지표가 되도록 가중치 조정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5% ⇨ 8%,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5% ⇨ 6%
 - 지방세징수율 5% ⇨ 6%
- (재정효율성) 세출효율성 지표 중 지출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규모가 큰 지표의 비중을 상향하여 세출효율성 부문의 대표지표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중치 조정
 - 지방보조금비율 5% ⇨ 6%,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 ⇨ 3%
 - 행사축제경비비율 4% ⇨ 3%
- 전문가(학계, 실무) 의견수렴 및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분석 지표개선 TF 회의를 통해 가중치 조정(안) 마련

<표 4-3>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조정(안)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17년도	'18년도 (안)	평가 분야	
재정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19%)	통합재정수지비율	12%	12%	-	
		경상수지비율	5%	7%	+2%	
	채무 관리 (21%)	관리채무비율	14%	14%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5%	-2%	
		통합유동부채비율	2%	2%	-	
	공기업 관리 (10%)	공기업부채비율	5%	5%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5%	-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30%)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4%	-1%	비율:증감률 5: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5%	3%	-2%	비율:증감률 5: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5%	6%	+1%	비율:제고율 5:5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8%	+3%	비율:증감률 5:5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6%	+1%	비율:증감률 5: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4%	3%	-1%	
	세출 효율 (2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	6%	+1%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제외 (2020년부터 일자리지원보조 제외) 비율:증감률 5: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4%	3%	-1%	비율:증감률 5:5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_정성평가			+5점	재정효율성예가점 FY2019부터 적용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3%	3%	-	
		업무추진비 절감률	3%	3%	-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4%	3%	-1%	비율:증감률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17년도	'18년도 (안)	평가 분야
					5: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2%	-
		(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_정성평가			+5점
재정 책임성	재정법령 준수	재정법령위반 (6개)			총점에서 감점 (감사주기, 법령위반 특성 등 검토를 통해 실시단 회의에서 최종감점 결정)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5점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2점*건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2점*건수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2점*건수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2점*건수		
	재정분석 대응도	재정분석대응도	-5점	-5점	총점에서 감점
	재정공시 노력도	재정공시노력도	+10점	+10점	총점에 가점
(재정공시 수정보완 조치 여부)		-	-2점	총점에서 감점 2019년 (FY2018)	
22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가/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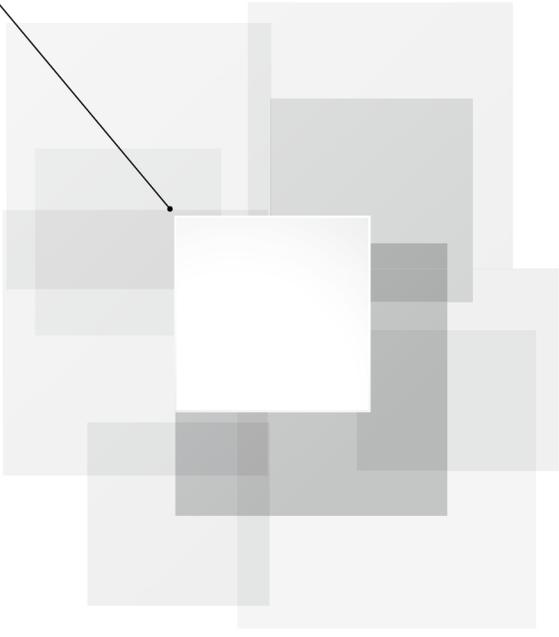
<표 4-4> 2018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공시공단/ 출자출연	하향지표	통합부채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직영,공사,공단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직영,공사,공단	상향지표	공기업
II.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2.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 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단년도	일반/기타특별 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 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 회계	하향지표	
	Ⅲ. 재정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인센티브 /페널티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 미래4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3. 관리채무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 4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참고 5. 장래세대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참고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우발채무
	참고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 회계	100%달 성	
	참고 8. 예산집행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 회계	100%달 성	
	참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참고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 회계	상향지표	사업예산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참고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사업예산
	참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사업예산
	참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사업예산
	참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상향지표	복식부기
	참고 15.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16. 인건비집행률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참고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참고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 신규(예고) 지표	신규 1. 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단년도	통합회계	인센티브	재정효율성 가점
	신규 2. 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 효율성증대)	단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인센티브	재정효율성 가점
※ 기금 지표	기금성과분석지표 1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운영 분석
	기금성과분석지표 2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성과분석지표 3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성과분석지표 4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성과분석지표 5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성과분석지표 6	단년도	기금회계		
	기금성과분석지표 7	단년도	기금회계		

주: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부록

지표별 정의표

KRILA

지표별 정의표

재정건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재정효율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8.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재정책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통합재정수지비율}(\%) = \{ \text{수입} - (\text{지출} + \text{순용자}) \} / (\text{지출} + \text{순용자}^*) \times 100$ <p>※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 순용자 = (용자지출-용자회수)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용자관련 수입 및 상환액은 채무활동(보전수입 및 보전 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통합재정수지비율 (단위 : 원)									
	회계구분	수입(A)	수입+순세계잉여금(D)	지출 및 순용자(B)			통합재정규모(C)	순세계잉여금(d)	통합재정수지 비율 (%) (A-B)/C × 100	순세계잉여금포함 통합재정수지 비율 (%) (D-B)/C × 100
				소계(B=a+b)	지출(a)	순용자(b)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출 + 순용자(용자지출 - 용자회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e호조상의 통합재정수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통합재정 수지 작성 근거 및 내용>

구 분	국 가	지 방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9조
시작연도	'79년	'05년('04년 시범)
작성기준	정부 재정통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분석 요령
주요내용	예산·결산 모두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 「지방재정365」에 전체 규모 공표, 기재부에 통보, 기재부에서 국제기구(IMF) 통계 제공 • (예산) '13년 처음으로 「재정고」에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관련 지출은 보전지출(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 지출 산정에서 제외 •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지출은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 수입 및 차입금 상환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규모 산정에서 제외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수입+융자회수) - (지출+융자지출) = 수입 - 지출 + 융자회수 - 융자지출 = 수입 - (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 수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 100

2. 경상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경상수지비율(\%)} = \frac{\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p>※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p> <p>※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p> <p>-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경상수지비율 (단위 : 원)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 (A/B) ×100				
	계 (①+②+③ +④+⑤)	인건비 ①	자치구 조정 교부금 (③광역)		계 (⑥+⑦+⑧+ ⑨+⑩-⑪)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⑤광역)	시군 조정교부금 (④광역)		특별 교부세 수익(⑩)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⑨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복식부기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상 비용과 경상수익 내역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관리채무비율(\%)} =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 지방채무잔액은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 잔액 적용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비율 (단위: 원)						
	구 분	2017년도 지방채무 잔액(A)				2017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a)+(b)+(c)+(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자 (작성부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환금자산}} \times 100$ <p>※ 환금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방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익 등</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환금자산(B)					지표값 (%) (A/B) ×100
		계(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b)	기타 비유동 부채(c)	계 (B=d+e +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 상품(e)	장기 대여 금(f)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재정상태표의 유동성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5.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 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통합부채 관점에서 유동부채(1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1년 내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산)의 충당정도를 측정하여,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통합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유동자산}} \times 100$ <p>※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 세출결산액 : 결산서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결산총액(지출액) - 재정정책과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입력</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포함								
제출서식	통합유동부채비율 (단위 : 원)								
	유동부채				유동자산(B)				지표값 (%) (A/B) × 100
	계 (A)	지자체 (직영 기업 포함)	지방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	계 (B)	지자체 (직영 기업 포함)	지방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재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17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통합부채 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공기업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공기업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공기업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총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 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p>*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영업이익 (A)</th> <th colspan="3">총자본(B)</th> <th rowspan="2">지표값(% (A/B)×100</th> </tr> <tr> <th>소계 (a+b)</th> <th>자기자본(a)</th> <th>부채(b)</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직영기업</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지방공사</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지방공단</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영업이익 (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구분	영업이익 (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재정상태표의 총자본(자본+부채), 영업이익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방세수입비율과 증감률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수준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p>1. 지방세수입비율(%) = 2017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p> <p>2. 지방세수입 증감률(%) = $\frac{2017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2016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times 100$ </p> <p>※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3년간 평균)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1. 지방세수입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A)</th> <th colspan="4">2015</th> <th colspan="2">2016</th> <th colspan="2">2017</th> <th rowspan="3">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3">지표값 (%) (A/B) ×100</th> </tr> <tr> <th colspan="2">평균 (A)</th> <th rowspan="2">지방세 교육세 (b)</th> <th rowspan="2">과년도 수입 (c)</th> <th rowspan="2"></th> <th rowspan="2"></th> <th rowspan="2"></th> <th rowspan="2"></th> </tr> <tr> <th>소계 (a-b-c)</th> <th>지방세 수입(a)</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A)	2015				2016		2017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지방세 교육세 (b)	과년도 수입 (c)					소계 (a-b-c)	지방세 수입(a)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A)	2015				2016		2017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지방세 교육세 (b)		과년도 수입 (c)																													
	소계 (a-b-c)	지방세 수입(a)																																

제출서식	2. 지방세수입 증감률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 수납액(A)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 수납액(B)			지표값 (%) {(A-B)/B} × 100	
	평균	2015				2016	2017	평균	2014	2015	2016				
		소계	지방세 수입 (a)	지방교육세 (b)	과년도 수입 (c)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상세외수입비율과 증감률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p>1. 경상세외수입비율(%) = 2017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7년도 세입결산액 × 100</p> <p>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frac{2017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2016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times 100$</p> <p>※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p>																												
측정시점(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1. 경상세외수입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표값 (%) (A/B) ×100</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평균 (A)</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2015</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6</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7</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경상세외 수입(a)</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자수입 (b)</th> <th style="text-align: center;"> </th> <th style="text-align: center;"> </th> <th style="text-align: center;"> </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2015			2016	2017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입 (b)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평균 (A)	2015			2016			2017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입 (b)																										

제출서식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전전년도 기준 최근 3 년간 경상세외수입 실 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평 균	2015			2016	2017	평 균	2014	2015	2016						
		소 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 수입(b)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총괄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6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10">2017년도 지방세징수율</th> </tr> <tr> <th rowspan="2">계(%) A=(a/b) ×100</th> <th colspan="5">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th> <th colspan="4">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th> </tr> <tr> <th>소계 (a)</th> <th>실제 수납 액</th> <th>과년도 분</th> <th>자동차세 (주행분)</th> <th>지방 소비 세</th> <th>소계 (b)</th> <th>실제 수납 액</th> <th>과년도 분</th> <th>자동차세 (주행분)</th> <th>지방 소비 세</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계(%) A=(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소계 (a)	실제 수납 액	과년도 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 소비 세	소계 (b)	실제 수납 액	과년도 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 소비 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계(%) A=(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소계 (a)	실제 수납 액	과년도 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 소비 세	소계 (b)	실제 수납 액	과년도 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 소비 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단위 : 원)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2016년도 지방세징수율														
	계 (%) A= (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계 (%) B= (c/d)×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c)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d)								
		소계 (a)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소계 (b)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소계 (c)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소계 (d)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의 부과액, 징수액 세입 목별조서의 지방소비세(111-08), 지난년도 수입액(113-01), 자동차세 (주행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 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 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p>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frac{2017\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2017\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2017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7년도 말 지방세 미수납액* - 2017년 말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은 반영액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p> <p>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 $\frac{2017\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6\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2016\text{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times 100$ 2016년도 체납누계액 = 2016년 말 다음연도 이월액 - 2016년 말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다음연도 이월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p>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2017년도 체납누계액(A=a-b)</th> <th rowspan="2">2017년도 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2017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 (a)</th> <th>2017년도 말 현재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b)</th> </tr> </thead> <tbody> <tr> <td></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7년도 체납누계액(A=a-b)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2017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 (a)	2017년도 말 현재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b)		직접입력		
2017년도 체납누계액(A=a-b)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2017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 (a)	2017년도 말 현재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b)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지표값 (%) {(A-B)/B} ×100
	2017년도 체납누계액			2016년도 체납누계액			
	체납누계액 (A=a-b)	미수납액 (a)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b)	체납누계액 (B=c-f)	다음연도 이월액 (c=d-e)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f)	
				미수납액 (d)	결손처분액 (e)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액 ▶ 연도말 체납누계액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p>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 $\frac{2017\text{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2017\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p> <p>※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2017년말 체납누계액 = 미수납액(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체납누계액에서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은 제외</p> <p>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 $\frac{2017\text{년 말 체납누계액} - 2016\text{년 말 체납누계액}^{**}}{2016\text{년 말 체납누계액}} \times 100$</p> <p>※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2016년말 체납누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미수납액-결손처분액 * 체납누계액에서 납기미도래징수액은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2017년도 체납누계액 (A=a-b)</th> <th rowspan="2">2017년도 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2017년말 현재 체납누계액 (a)</th> <th>2017년말 납기 미도래미징수액 (b)</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2017년도 체납누계액 (A=a-b)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2017년말 현재 체납누계액 (a)	2017년말 납기 미도래미징수액 (b)			직접입력	
2017년도 체납누계액 (A=a-b)		2017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2017년말 현재 체납누계액 (a)	2017년말 납기 미도래미징수액 (b)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체납누계액 (A=a-b)	2016년도 체납누계액 (B = c-f)	다음연도 이월액 (c = d-e)		2016년 말 납기 미도래 미징수 액 (f)	지표값 (%) $\{(A-B)/B\} \times 100$
			미수 납액 (d)	결손 처분액 (e)		
					직접 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 총괄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표준세율 과세총액과 적용세율 과세총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위 : 원)			
	탄력세율 적용세목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 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 당 세목의 과세총액 (A)	2017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 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B)	지표값 (A/B)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주민세 개인균등분(특광역시, 시, 군), 지역자원시설세(도) 등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 자치구는 탄력세율 적용 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값을 부여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 하여 작성.			
검증자료	2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수입의 징수액 ▶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1. 지방보조금비율(%) = $\frac{\text{지방보조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p> <p>2. 지방보조금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text{2016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text{2016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times 100$</p> <p>※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p> <p>※ 평가 시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외</p> <p>※ FY2019부터 평가 시 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p>1. 지방보조금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e+f)</th> <th colspan="6">지방보조금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민간경상사업보조(a)</th> <th>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b)</th> <th>민간행사사업보조(c)</th> <th>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d)</th> <th>사회복지사업보조(e)</th> <th>민간자본사업보조(f)</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e+f)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민간경상사업보조(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b)	민간행사사업보조(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e)	민간자본사업보조(f)	일반회계									기타특별								
계 (A=a+b+c+d+e+f)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민간경상사업보조(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b)	민간행사사업보조(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e)	민간자본사업보조(f)																														
일반회계																																				
기타특별																																				

	2. 지방보조금증감률													
	(단위 : 원)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B)						지표값 (%) {(A-B)/B } × 100	
	계 (A= a+b +c+d+e +f)	민간 경상 사업 비보 조 (a)	민간 단체 법정 운영 비보 조 (b)	민간 행시 사업 비보 조 (c)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 비보 조 (d)	사회 복지 사업 비보 조 (e)	민간 자본 사업 비보 조 (f)	계 (B=g+ h+i+j +k+l)	민간 경상 사업 비보 조 (g)	민간 단체 법정 운영 비보 조 (h)	민간 행시 사업 비보 조 (i)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 비보 조 (j)		사회 복지 사업 비보 조 (k)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지방보조금 항목 확인 ▶ 합동평가 일자리사업평가 증빙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의 비율로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frac{\text{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p> <p>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text{2016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text{2016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times 100$</p> <p>※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 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 제외 ※ 출연금(306) 중 법정출연금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직접입력) ※ FY2019부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제외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정성평가) 추가</p>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제출서식	<p>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e+f)</th> <th colspan="6">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th> <th rowspan="2">법정 출연금</th> <th rowspan="2">세출 결산 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출자 금 (a)</th> <th>출연 금 (b)</th> <th>전출 금 (c)</th> <th>공사공 단자본 전출금 (d)</th> <th>공기업 경상 전출금 (e)</th> <th>공기업 자본 전출금 (f)</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직접 입력</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e+f)	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						법정 출연금	세출 결산 액 (B)	지표값 (%) (A/B) ×100	출자 금 (a)	출연 금 (b)	전출 금 (c)	공사공 단자본 전출금 (d)	공기업 경상 전출금 (e)	공기업 자본 전출금 (f)	일반회계							직접 입력		
계 (A=a+b+c+d+e+f)	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						법정 출연금	세출 결산 액 (B)	지표값 (%) (A/B) ×100																				
	출자 금 (a)	출연 금 (b)	전출 금 (c)	공사공 단자본 전출금 (d)	공기업 경상 전출금 (e)	공기업 자본 전출금 (f)																							
일반회계							직접 입력																						

		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						법정출연금	세출결산액(B)	지표값(%)(A/B)×100					
계(A=a+b+c+d+e+f)	출자금(a)	출연금(b)	전출금(c)	공사공단자본전출금(d)	공기업경상전출금(e)	공기업자본전출금(f)									
기타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기금								직접입력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단위 : 원)															
		2017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지표값(%){(A-B)/B}×100			
계(A=a+b+c+d+e+f)	출자금(a)	출연금(b)	전출금(c)	공사공단자본전출금(d)	공기업경상전출금(e)	공기업자본전출금(f)	법정출연금	계(B=g+h+i+k+l)	출자금(g)	출연금(h)	전출금(i)		공사공단자본전출금(j)	공기업경상전출금(k)	공기업자본전출금(l)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금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법정출연금 내역 및 금액							작성자(작성부서)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100 - \left\{ \frac{\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times 100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7.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의원국외여비 기준액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의원수 x 200만원 기준을 적용 (자율편성 부분 및 예외편성대상 증액분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단위 : 원)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 값 (%) 100- { (A/B) X 100}					
소계 (A= a+b+ c-d)	의원 국외 여비 (a)	의정 운영 공통 경비 (b)	의원운 영업무 추진비 (c)	예외사항으 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 여비 (d)	소계 (B=d+ e+f)	의원 국외 여비 (d)	의정 운영 공통 경비 (e)	의원운 영업무 추진비 (f)	
일반				직접입력	일반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입 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의회경비 기준액과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증빙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상임위 원회 수 등 확인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업무추진비 절감률(\%)} = 100 - \left\{ \frac{\text{업무추진비 결산액}}{\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times 100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7. 12. 31 기준이며, 2017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로 반영 ※ 2017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2016.12.31 기준으로 산출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 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업무추진비 절감률 (단위 : 원)		
	업무추진비 결산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소계 (B=c+d)
	일반회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d)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 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업무추진비 기준액과 업무추진비 결산액 증빙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직위의 적합성 기준금액 관련 2017년 중 조직개편에 대한 증빙자료,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8.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비용 관련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1.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p> <p>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frac{(2017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6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6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times 100$</p> <p>※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p>※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 전국소년체전 · 전국장애인체전 및 행안부 인정 행사축제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인정 국제행사, 문체부 인정 축제행사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p>※ 2017년 결산은 정부 또는 시·도 시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상 예외로 인정</p> <p>* 부산 ITU 전권회의,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강원도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등</p> <p>※ 일몰제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한 축제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새로 전국축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차이 점수 산정</p> <p>ex) 2015년도까지 계산 제외대상 축제였다가, 2016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계산축제가 되었으나, 다시 2017년 심사에서 계산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6년도 점수 산정시= 2015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 다음 2016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p>	

	2017년 점수 산정시= 2016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2017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측정시점(기간)	2015~2017회계연도 결산 (3년 추세 파악)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사·축제경비 비율										
	(단위: 원)										
	2017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 경비(b)				2017년 세출 결산액 (c)	지표값 (%) $A=(a-b)/c \times 100$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6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 경비(e)				2016년 세출 결산액 (f)	지표값 (%) $B=(d-e)/f \times 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5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 경비(h)				2015년 세출 결산액 (i)	지표값 (%) $C=(g-h)/i \times 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 축제경비(b)				2017년 세출 결산액 (c)	$A=(a-b)/c \times 100$	지표 값 (%)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6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 축제경비(e)				2016년 세출 결산액 (f)	B= (d-e)/f × 100	{(A-B)/B} × 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2015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 축제경비(h)				2015년 세출 결산액 (i)	C= (g-h)/i × 100	{(B-C)/C} × 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검증자료	20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 행사, 행안부 인정 축제행사 및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제외 경비 확인 (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반영되어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입력 시 해당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입력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직접입력)																
계	기재부 인정				문체부 인정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행안부 인정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7년																
2016년																
2015년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 민간위탁금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text{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text{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 \times 100$ ※ 민간위탁금(307-05)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재정운영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정성평가) 추가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e)		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B=f/j)	지표값(%) {(A-B)/B} x 100	
	2017년 민간 위탁금 (a=b-c-d)	민간 위탁금 (b)	2017년 세출 결산액 (e)	2016년 민간 위탁금 (f=g-h-i)	민간 위탁금 (g)
계			계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민간위탁금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20. 재정법령 준수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수부여 기준 : 결산연도 기준 법령위반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위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상환용자금 관리 부적정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 - 지방회계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추가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 대비 2016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아닐 때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2017년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대비 201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아닐 때 * 정부합동 감사(감사실시연도 기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연도 기준) 수감시 재정관련 법령위반사항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 ※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1%가 법정기준임) 			
$\text{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frac{\text{2017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text{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3, 2014, 2015) 평균}} \times 100(\%)$			

	<p>※ 보통세(11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2017년 예산 작성 시 2016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5년부터 최근 3년 계산</p> <p>※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p>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35%가 법정기준임)</p> $\text{상생발전기금비율} = \frac{2017\text{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7\text{년도 지방소비세 실제 수입액}(111-08)\text{의 } 5\%} \times 100(\%)$ <p>※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p> <p>※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p>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감사결과 법령위반 자료								
지표특징	<p>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p> <p>특성: 준법성지표, 책임성지표</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법령 의무구정 이행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p> <table border="1" data-bbox="392 1474 1106 1572"> <thead> <tr> <th>구분</th> <th>법령위반 총 건수 (A+B+C+D+E)</th> <th>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th> <th>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th> </tr> </thead> <tbody> <tr> <td>2017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r> </tbody> </table>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D+E)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2017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D+E)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2017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구분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D)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E)		
	2017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p>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2017회계 연도 적립 재난관리 기금전출금 (A)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5회계 연도	2014회계 연도	2013회계 연도	
	B = $(a+b+c)/3$	보통세 (111) a	보통세 (111) b	보통세 (111) c	
직접입력					
<p>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2017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8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7회계연도 지방 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p>※ 현지실사 시 법령 위반사항 점검</p>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연락처			
	<p>※ 현장검증시 확인사항(✓)</p> <p>▶ 해당 법령위반 관련 처분요구서 등 자료 확인</p>	작성자 (작성부서)			

21. 재정공시 노력도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인센티브
------	-------	------	------

개요(정의)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인센티브 부여		
평가방법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5점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 2개		3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재정공시 수정보완 조치 여부(-2점) FY2018 적용			
평가내용		배점	
1. 재정공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수정보완 사항 조치 여부		-2점	
- 조치 미 이행		-2점	
- 조치 이행		0점	
※ 현지실사 시 재정공시 평가항목을 점검 ※ 2017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공시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공시의 주민 접근성 향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재정공시 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직접입력 (공시방법, 수단)	주민이해 증진 노력 직접입력	수정보완 조치 이행여부 중앙입력 (FY2018부터)
검증자료	2017 회계연도 재정공시 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공시 노력도 평가항목 관련 서류 준비		작성자 (작성부서)

22.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자료입력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며,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재정분석 대응도 (-5점)		
	평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3점
- 예		0점	
- 아니오*		-3점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 기한 외 수정요청 등			
※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 사항 점검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분석 입력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분석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정확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재정분석 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입력 자료의 누락, 오류 사항	점수
	직접입력 (준수/ 미준수 기재)	직접입력 (누락, 오류 사항 기재)	
※ 현지실사 시 자료 입력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데이터 입력 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및 입력데이터의 누락, 오류 내역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재정분석 참고지표

1. 지방채무잔액지수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 관리채무부담비율
4. 관리채무상환비율
5. 장래세대부담비율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예산집행률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15. 실질수지비율
16. 인건비집행률
17. 일자리사업 지출비율
18.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지방채무잔액지수}(\%) =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일반재원 결산액}} \times 100$ <p>※ 지방채무잔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2년 한도 산정까지 적용)에 따른 잔액임</p> <p>※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입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p> <p>*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p> <p>※ 지방채무 잔액 : 채무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의 지방채무 범위와 동일 ⇒ 지방채 증권+차입금 +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시·도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지방채무잔액지수 (구분가능한 회계까지만 구분) (단위: 원)									
	구분	2017 지방채무 잔액(A)			2017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a)+(b) +(c)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계 B= (e)+(f) +(g)+(h) +(i)	지 방 세 (e)		세 외 수 입 (f)	지 방 교 부 세 (g)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자 (작성부서)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래4년 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된다고 판단													
산정공식	<p>지방채무상환비비율(%) = $\frac{\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p> <p>☛ 과거4년 : 2014, 2015, 2016, 2017년, 미래4년 : 2018, 2019, 2020, 2021년</p> <p>※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4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값임</p> <p>※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분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p> <p>*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p> <p>※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p>													
측정시점 (기간)	2014~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지방채무상환비비율 (단위 : 원)													
	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과거4년+미래4년간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 값 (%) (A/B) ×100					
	계 A= (1+d)	과거4년			미래 4년 지방채무상환액(d)	계 B=e+f+g+h+i+j	과거 4년			미래 4년 일반재원결산액(j)				
		순지방비(1)	조기상환액(2)	차환액(3)			국비 지원상환(b)	시도 비 지원상환(c)			지방세(e)	세외수입(f)	지방교부세(g)	자치구조정교부금(h)
2010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기초 단 체 만 해당							
검증자료	201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관리채무부담비율(\%)} =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text{경상일반재원}} \times 100$ <p>※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2017 지방채무 잔액(A)					2017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a)+ (b)+ (c)+ (d)+ (e)	지방 채 증 권 (a)	차 입 금 (b)	채 무 부 담 행 위 (c)	보 증 채 무 이 행 액 (d)	BTL 지 급 잔 액 (e)	계 B = (f)+ (g)+ (h)+ (i)+ (j)	지 방 세 (f)	경 상 세 외 수 입 (g)	지 방 교 부 세 (h)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i)	시 군 정 교 부 금 (j)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p>관리채무상환비율(%) =</p> $\frac{\text{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times 100$ <p>☛ 미래 4년 : 2018, 2019, 2020, 20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측정시점(기간)	2018~2021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값 (%) (A/B) ×100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B)						
	계 A= (1)	미래 4년 순지방비 (a=1+2+3)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비 지원 상환 (c)	계 B=c+f +g+h+i+j	미래 4년				
		채무 상환 액 (1)	조기 상환 액 (2)	차환 액 (3)				지방 세외 수입 (e)	경상 세외 수입 (f)	지방 교부 세 (g)		자치 교부 금 (h)
					*기초 단체 만 해당							
검증자료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 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 용과 일치 여부						작성자 (작성부서)					

5.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장래세대부담비율}(\%) = \frac{\text{부채합계}}{\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p>※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량만 파악</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장래세대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부채총액(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입력 요망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해당연도 세입예산(당초)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예산(혹은 결산)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값(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재정위험이 낮아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세입예산대비우발채무총액비율}(\%) = \frac{\text{우발채무 총액}}{\text{세입예산(당초)}} \times 100$ <p>※ 회계범위 : 일반, 특별(기타, 공기업), 기금 ※ 보증범위 :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 외 부담 포함</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p>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우발채무 총액(A=a+b)</th> <th style="width:10%;">보증 채무액 (a)</th> <th style="width:25%;">예산외의무부담액(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기타) (b)</th> <th style="width:10%;">세입예산 (당초) (B)</th> <th style="width:10%;">2017년도 지표값 (%) (A/B*100)</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현황실태조사 자료 입력</p>			우발채무 총액(A=a+b)	보증 채무액 (a)	예산외의무부담액(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기타) (b)	세입예산 (당초) (B)	2017년도 지표값 (%) (A/B*100)					
우발채무 총액(A=a+b)	보증 채무액 (a)	예산외의무부담액(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기타) (b)	세입예산 (당초) (B)	2017년도 지표값 (%) (A/B*100)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및 별도 파악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서 확인 ▶ 지급보증, 예산외 부담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p> $\frac{\text{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text{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times 100$ <p>※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6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의 2017년 사업예산총액(예비비포함)</p> <p>※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p>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최종예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p>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A)</th> <th colspan="3">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계 A=(a-b)</th> <th>정책사업비 (a)</th> <th>천재,재해 (b)</th> <th>계 B=(c+d)</th> <th>정책사업비 (c)</th> <th>예비비 (d)</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일반회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 rowspan="3"></td> </tr> <tr> <td>기타특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기타특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r> <tr> <td>공기업</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공기업</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r> </tbody> </table> <p>※ (b)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p> <p>※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사업비 = 총예산-총액인건비-(201-01~02, 202-01~02, 720, 730, 220)</p>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A)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B)			지표값 (%) (A/B) ×100	계 A=(a-b)	정책사업비 (a)	천재,재해 (b)	계 B=(c+d)	정책사업비 (c)	예비비 (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A)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B)			지표값 (%) (A/B) ×100																													
계 A=(a-b)	정책사업비 (a)	천재,재해 (b)	계 B=(c+d)	정책사업비 (c)	예비비 (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예산집행률(\%)} = \frac{\text{세출결산액}}{\text{예산현액}} \times 100$ <p>※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 (바람직한 상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p>예산집행률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회계명</th> <th>회계수</th> <th>세출결산액 (A)</th> <th>예산현액 (B)</th> <th>비율(% (A/B)×100</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현액 (B)	비율(% (A/B)×100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현액 (B)	비율(% (A/B)×100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1. 의무지출비율(%) = $\frac{\text{의무지출}}{\text{세출결산액}} \times 100$</p> <p>2. 의무지출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text{2016년도 의무지출 결산액})}{\text{2016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times 100$</p> <p>※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 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법정경비(자치구조정교부금(308-03)(광역), 시군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p>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자료산출(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p>1. 의무지출비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6">의무지출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A/B) × 100</th> </tr> <tr> <th>계(A= a+b +c+d +e+f +g+h +i+j)</th> <th>인력운영비(a)</th> <th>기본경비(b)</th> <th>국도비사업비(c)</th> <th>의회비(d)</th> <th>차입금원금상환(e)</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직접입력</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차입금이자상환(f)</td> <td>시군조정교부금(광역)(g)</td> <td>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td> <td>상생발전기금(광역)(i)</td> <td>재난관리기금전출금(j)</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 100	계(A= a+b +c+d +e+f +g+h +i+j)	인력운영비(a)	기본경비(b)	국도비사업비(c)	의회비(d)	차입금원금상환(e)				직접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 100																																		
계(A= a+b +c+d +e+f +g+h +i+j)	인력운영비(a)	기본경비(b)	국도비사업비(c)	의회비(d)	차입금원금상환(e)																																				
			직접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2. 의무지출증감률										(단위:원)		
		2017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제출서식	계 (A=a+ b+c+ d+e+ f+g+ h+i+j)	인력 운영 비 (a)	기본 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 금 원금 상환 (e)	계 (B=k+ l+m+ n+o+ p+q+ r+s+t)	인력 운영 비 (k)	기본 경비 (l)	국도비 사업비 (m)	의회비 (n)	차입 금 원금 상환 (o)	지표값 (%) $\{(A-B)/B\}$ $\times 100$	
		직접입 력							직접 입력					
		차입 금 이자 상환 (f)	시군 조정 교부 금 (광역) (g)	자치구 조정교 부금 (광역) (h)	상생발 전기금 (광역) (i)	재난 관리 기금 전출 금(j)	차입 금이 자상 환(p)	시군 조정 교부 금 (광역) (q)	자치구 조정 교부금 (광역) (r)	상생발 전기금 (광역) (s)	재난 관리 기금 전출 금(t)			
				직접입 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검증자료	2016~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 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 의회비, 채 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 환), 시군조정교부금(광역), 자치구조정교부 금(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 금전출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해석 및 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정책사업투자비비율(\%)} = \frac{\text{투자지출액}}{\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p>*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용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회계구분 추가) (단위 : 원)												
	회계구분	투자지출액(A)										정책사업비 결산액 (B)	지표 값 (%) (A/B) ×100
		소계 (A=a +b-c)	자본지출(a) (400)			용자및출자(b) (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c) (404)				
			행정 운영 비	재무 활동	정책 사업	행정 운영 비	재무 활동	정책 사업	행정 운영 비	재무 활동	정책 사업		
일반													
기타 특별													
공 기업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400)+용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자본지출(400), 용자및출자(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정책사업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 $\frac{\text{행정운영경비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text{2016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text{2016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times 10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단위: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행정운영경비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100</th> </tr> <tr> <th>계 (A=a+b)</th> <th>인력운영비 (a)</th> <th>기본경비 (b)</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단위: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2017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th> <th colspan="3">2016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A-B)/B} ×100</th> </tr> <tr> <th>계 (A=a+b)</th> <th>기본경비 (a)</th> <th>인력운영비 (b)</th> <th>계 (B=c+d)</th> <th>기본경비 (c)</th> <th>인력운영비 (d)</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7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 (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2017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2016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 (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검증자료	2016~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사업예산 결산서 상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조직 및 정·현원 현황표 ▶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관련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 $\frac{\text{시설비지출액}}{\text{정책사업비}} \times 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시설비지출액} - \text{2016년도 시설비지출액})}{\text{2016년도 시설비지출액}} \times 100$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지표값(%) (A/B)×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단위 : 원)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6년도 시설비지출액(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정책사업비 확인 ▶ 시설비및부대비(401)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frac{\text{자본시설유지비용}}{\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frac{(\text{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text{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text{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times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주민편의시설 (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6~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회계구분)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자본시설유지비용(A)</th> <th colspan="3">유형고정자산(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계 (A= a+b+c)</th> <th>수선 유지비 (a)</th> <th>연료비 (b)</th> <th>전기요금 (c)</th> <th>계 (B= d+e)</th> <th>일반유형 자산(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d)</th> <th>주민편의 시설(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e)</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c)	수선 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 d+e)	일반유형 자산(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e)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c)	수선 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 d+e)	일반유형 자산(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및건설 중자산 제외)(e)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없이 총계)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th> <th colspan="4">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th> <th rowspan="2">지표값 (%) {(A-B)/B} ×100</th> </tr> <tr> <th>계 (A= a+b+c)</th> <th>수선 유지비 (a)</th> <th>연료비 (b)</th> <th>전기요금 (c)</th> <th>계 (B= d+e+f)</th> <th>수선 유지비 (d)</th> <th>연료비 (e)</th> <th>전기요금 (f)</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지표값 (%) {(A-B)/B} ×100	계 (A= a+b+c)	수선 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 d+e+f)	수선 유지비 (d)	연료비 (e)	전기요금 (f)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지표값 (%) {(A-B)/B} ×100																				
계 (A= a+b+c)	수선 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 d+e+f)	수선 유지비 (d)	연료비 (e)	전기요금 (f)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전기요금은 e호조에서 확인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확인 일반 유형자산(토지 제외)과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접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잠재력을 판단			
산정공식	1. 고정순자산비율(%) = $\frac{\text{고정순자산}}{\text{순자산 총계}} \times 100$ 2. 고정순자산증감률(%) = $\frac{2017\text{년도 고정순자산} - 2016\text{년도 고정순자산}}{2016\text{년도 고정순자산}} \times 100$ ※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측정시점(기간)	2016~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고정순자산비율 (단위 : 원)			
	2017년 고정순자산(A)	2017년 순자산 총계(B)	지표값(%) (A/B) × 100	
	2. 고정순자산증감률 (단위 : 원)			
	2017년 고정순자산 (A)	2016년 고정순자산 (B)	지표값(%) {(A-B)/B}×100	
※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고정순자산증감률				
		연도	고정순자산 증감률	
		2017년		
		2016년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2016년과 2017년의 고정순자산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5.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재원결산액 대비 실질수지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실질수지비율(\%)} =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p>※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p>						
측정시점(기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실질수지비율 (단위 : 원)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 잔액(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인건비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 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p>인건비 집행률 (%) = $\left\{ \frac{\text{인건비 결산액}}{\text{총액인건비 기준액}} \times 100 \right\}$ </p> <p>※ 총액인건비 기준액 :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인건비 기준액(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통보) 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p> <p>※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p> <p>※ 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값이 양호해도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인건비 집행률 (단위 : 원)					
	2017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7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 {(A/B) X 100}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소방직 인건비 (b)		반영액 (B=c-d)	기준인 건비 (c)
	일반회계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준인건비 기준액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기준인건비 결산액 확인 ▶ 소방직 인건비 현황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일자리사업 지출 비율(\%)} = \frac{\text{일자리지원사업 지출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p>* 일자리사업 :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금액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고용노동부 자료) 를 활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입력</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성질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지원 사업 지출액(A) 중앙입력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8.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결산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text{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frac{\text{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p>*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총액</p> <p>* 위 산식은 추후 변경 가능</p>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출결산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신규(예고) 지표 (FY2019)

1.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정성지표)
2. 일자리창출 및 재정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정성지표)

1.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정성평가(인센티브)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지출하는 금액 중 일자리창출, 인재채용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운영효율성 증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측정하여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으로 출자·출연·전출하는 사업과 위탁하는 사업 중 인재채용, 일자리창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평가		
평가방법	1.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평가항목	평가내용	
	일자리 창출 출자출연 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결산 대비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비율 - 5% 미만 (1점)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5% 미만 (3점) - 15% 이상 ~ 20% 미만 (4점) - 20% 이상 ~ (5점)	
	※ 평가 내용 및 점수산정방식은 추후 변경 가능		
측정시점(기간)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자치단체 제출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 노력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목록 (최대 5개) ※ 현지실사 시 제출자료 점검		
검증자료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사업, 민간 위탁사업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사업계 회사, 일자리창출 증빙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정성평가(인센티브)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지출하는 금액 중 일자리창출, 인재채용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운영효율성 증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측정하여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으로 출자·출연·전출하는 사업과 위탁하는 사업 중 인재채용, 일자리창출,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평가		
평가방법	일자리창출 및 재정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평가항목	평가내용	
	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 중 예산절감 등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일자리 등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에 기여한 지출 비율 - 5% 미만 (1점)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5% 미만 (3점) - 15% 이상 ~ 20% 미만 (4점) - 20% 이상 ~ (5점)	
※ 평가 내용 및 점수산정방식은 추후 변경 가능			
측정시점(기간)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자치단체 제출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 노력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창출, 효율성 증대 민간위탁금 목록 (최대 5개) ※ 현지실사 시 제출자료 점검		
검증자료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사업, 민간위탁사업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일자리창출, 효율성증대 민간위탁금: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작성자 (작성부서)	